

조선후기 蔭官의 初入仕 임용

박 현 순*

-
- | | |
|-----------------|--------------------------------|
| 1. 머리말 | 4. 『政事冊』을 통해 본 영조대 초입사직의
임용 |
| 2. 음관 예비후보군의 구성 | 5. 맷음말 |
| 3. 음관 초입사직의 구성 | |
-

초록: 이 연구는 조선후기 음관의 초입사 경로에 대한 이해가 불분명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그 임용 방법을 추적하였다. 먼저 음관의 초입사와 초입사직에 관련된 규정을 검토하고, 영조대 『政事冊』을 활용하여 음관 초입사 임용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조선전기 음관의 초입사는 주로 蔭子弟取才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명종대에 생원·진사 임용을 정식화한 이래 음자제취재는 점차 유명무실화되고 생원·진사의 임용이 음관을 임용하는 주된 방법으로 자리 잡았다. 다만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幼學과 中庶層 등에게도 임용의 기회를 열어주었다. 그리고, 정책적인 배려로 국가유공자의 奉祀孫, 鄉薦·別薦 등의 추천을 받은 지방인 등을 특례로 임용하였다.

다른 관직과 달리 음관 초입사직의 의망은 吏曹判書가 전적으로 담당하였다. 실제 임용 결과를 보면 생원·진사 임용이 중심을 차지하는 가운데 특례임용이 유학의 관직 진출로로 기능하였다. 생원·진사 임용은 新榜合格者를 우선하였으며, 서울출신에게 편중된 양상을 보였다. 이를 통해 조선후기 음관의 초입사 경로와 인사 방법, 임용 현황을 조망해 볼 수 있다.

핵심어 : 蔭官, 蔭官初入仕, 政事冊, 生員·進士, 門蔭, 蔭取才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K부교수.

1. 머리말

조선시대 관직은 정치권력을 재분배하고 사회계층을 재생산하는 매개였다. 관직과 정치권력·사회계층간의 상관관계는 주로 문과급제자나 문관 청요직을 통해 검토되어 왔으나 蔭職 역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였다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¹⁾ 다만 음직은 정치적인 비중이 낮은 데다 제도가 명확하지 않아 그다지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을 따름이다.

조선시대 관료는 文官, 武官, 蔭官으로 대별되는데, 음관은 문무과에 급제한 문관이나 무관과는 다른 경로를 통해 입사한 관료를 통틀어 가리킨다.²⁾ 음관은 법적으로 정해진 음관의 초입사직을 통해 벼슬살이를 시작하여 음관을 임용하는 蔭窠를 통해 승진하며 법정근무기간을 채운 뒤 6품으로 승진하여 지방수령으로 나갈 수 있었다.³⁾ 이 때문에 음관의 초입사는 미래의 수령을 선발하는 것이라는 명분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문무과 급제를 통해 입사하는 문무관과 달리 음관의 입사 경로는 다양하였다. 조선전기에는 음관의 초입사방식을 蔭子弟取才와 천거, 곧 門蔭과 保舉로 대별하였다. 그러나 문음 출신의 비중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문관이나 무관과 구분되는 관직자를 ‘음관’으로 일컫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음관이라는 용어는 16세기 중반 명종대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다.⁴⁾

1) 조선시대 음관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책이 있다. 朴洪甲, 1994 『朝鮮時代門蔭研究』, 探求堂; 任敏赫, 2002 『朝鮮時代 蔭官研究』, 한성대 출판부.

2) 음관의 개념에 대해서는 임민혁, 앞의 책, 14-15면.

3) 문관과 음관은 모두 9품직에서 벼슬살이를 시작하지만 7품 이하의 參下官 단계에서는 근무하는 관서와 승진 경로가 분리되어 있었다. 문관은 승문원, 성균관, 교서관 分館을 거쳐 문관을 임용하는 자리, 곧 文窠를 거쳐 6품으로 승진하였고, 음관은 參奉으로 대표되는 음관의 초입사직으로 입사하여 京各司의 봉사, 직장 등 蔭窠를 거쳐 6품으로 승진하였다. 『경국대전』에는 문관을 임용하는 자리만 명시하고 있는데, 7품 이하 참하관 단계에서는 이를 제외한 자리는 모두 음관을 임용하는 자리였다. 문관 참하관의 승진 경로에 대해서는 나영훈, 2020 『조선 현종대 문과급제자의 관직 경로와 배경』, 『조선시대사학보』 94 참조.

4) 임민혁, 앞의 책, 27-32면.

천거는 道薦, 鄉薦, 別薦, 御史薦, 館薦 등의 형식으로 조선후기에도 꾸준히 시행되었다. 이와 달리 음자제취재, 곧 문음은 점차 유명무실화되어 결국 폐지되었다.⁵⁾ 하지만 음관이라는 용어는 문무과 출신을 제외한 여타의 관료를 통칭하는 용어로 계속 사용되었다. 흔히 음관은 문음으로 임용되었다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으나 조선후기의 음관은 문음제도와는 무관한 존재였다. 음관의 벼슬로는 ‘蔭路’로 지칭하였는데, 이 역시 문무관과 구분되는 음관들의 벼슬로를 통칭하여 가리키는 것으로 음취재와 같은 특정한 방식의 벼슬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조선후기 음관이 처음 벼슬을 시작한 경로는 19세기 『蔭案』을 분석한 임민혁의 연구를 통해 그 일단을 살펴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음관들이 국왕의 특명에 의한 承傳 임용, 道薦 · 別薦 · 御史薦 · 太學公薦 · 大臣薦 등의 각종 천거, 清白吏 · 先賢 · 戰亡人 · 犯死人 등 국가유공자의 嫡長孫 임용 등 다기한 경로를 통해 벼슬 길에 나아갔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⁶⁾

그런데, 19세기 『음안』에서 초입사 경로가 확인되는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다. 생원 · 진사는 1,243명 가운데 45명(3.6%), 유학은 1,153명 가운데 347명(30.1%)만이 초입사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나머지 생원 · 진사의 96.4%, 유학의 69.9%는 그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다.⁷⁾

영조-고종대 吏曹의 인사기록을 담은 『政事冊』에도 초입사의 경우 임용 사유들이 기재되어 있다.⁸⁾ 그런데 19세기 『음안』에서처럼 임용 사유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다수는 임용된 사유 대신 나이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이를 단순한 기록의 누락으로 볼 수 있을까? 혹시 기재 사항의 차이가 임용 경로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5) 음자제취재는 17세기 이후 유명무실화되었는데 『大典通編』(1785)에는 그대로 실려 있으나 『대전회통』에는 폐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음자제취재의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후술하겠다.

6) 임민혁, 앞의 책, 225면 및 231면, 234면.

7) 임민혁, 위의 글.

8) 『政事冊』(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奎貴12222-v.1-132). 이 책에는 영조 11년(1735)부터 고종 31년(1894)사이 57개년의 인사기록이 실려 있다.

조선후기 음관의 초입사 경로는 19세기 『음안』이나 『정사책』의 기재 내용을 통해 중요한 시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체에 비하면 확인되는 사례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승전, 천거, 적장손 임용이 일반적인 인사방식이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가시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여전히 조선후기 음관의 초입사 경로에 대한 이해가 불분명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조선후기 음관 초입사직의 임용 방법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먼저 음관의 초입사와 초입사직에 관련된 규정을 검토하고, 영조대 『政事冊』을 활용하여 음관 초입사 임용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선후기 음관의 초입사 경로와 인사 방법, 임용 현황을 조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음관 예비후보군의 구성

1) 음취재에서 생원·진사 임용으로

조선시대의 관직은 東班과 西班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각각 이조와 병조에서 인사를 담당하였다. 직제를 동반과 서반으로 구분한 것과 달리 관원은 문관, 무관, 음관으로 구분하였다. 『경국대전』에는 文官·文臣과 武官·武臣만 언급하고 있으나 16세기 중반에는 文·武·蔭이라는 구분이 정착되며, 蔭官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⁹⁾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고려에서는 직제를 文班과 武班으로 구분하고 관료도 문관과 무관으로 구분하였다. 이 때의 문관은 문반직, 무관은 무반직을 띠는 관료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문관은 문과 출신, 무관은 무과 출신을 가리켰다. 이에 따라 문무과 출신이 아닌 관원들을 지칭할 용어가 필요하게 되었다. 『경국대전』에서는 전체 관료들 중에서 과거 출신인 문관과 무관을 따로 구분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하지만 과거의 시행이 늘어나 문관과 무관 수가 늘어나고 이들의

9) 임민혁, 앞의 책, 27-32면.

정치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오히려 문무관을 중심으로 이들을 제외한 관료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음관’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다. ‘음관’이라는 개념의 등장은 조선의 관제가 문무관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관원을 문·무·음으로 구분한 것과 달리 직제는 계속 동반과 서반으로 구분하였다. 그 가운데 문관과 음관은 동반직, 무관은 서반직에 주로 임용되었다. 하지만 서반체아직의 경우처럼 문관이나 음관이 서반직에 임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경국대전』에는 문관·무관·음관의 초입사에 관련된 규정이 각각 따로 실려 있다. 문관은 吏典 諸科, 무관은 兵典 武科 조항에 실려 있으며, 음관은 吏典의 取才와 薦舉 조항에 관련 규정이 실려 있다.

취재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초입사와 관련된 취재는 蔭子弟取才, 錄事取才, 書吏取才이다. 음자제취재는 有蔭子孫, 곧 공신과 2품 이상 관료의 자·손·서·제·질, 실직 3품관의 자와 손, 청요직 관료의 자 중 20세 이상이 된 자들에게 응시를 허용하고, 입격자를 서용하는 제도이다.¹⁰⁾ 흔히 ‘門蔭’으로 일컬어졌으며, ‘蔭取才’, ‘蔭才’라고도 불렀다. 매년 정월에 한차례씩 이조에서 취재를 실시하고 합격자의 이름을 置簿冊에 기록해 두었다가 순차적으로 초입사직에 임용하였다. 녹사취재와 서리취재는 경아전인 녹사와 서리를 선발하는 시험이지만 녹사와 서리는 일정기간 근무하고 퇴직하면 守令取才와 驛渡丞取才를 거쳐 음관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천거 조항에는 경외의 동서반 3품 이상 관원이 3년마다 3명씩 추천하는 제도가 수록되어 있다.¹¹⁾ 薦主가 보증인이 되어 추천하기 때문에 흔히 ‘保舉’라고 일컬었다. 천거 대상은 3품 이하 관원에서 無職인 庶人까지로 특별한 자격제한은 없었다. 유음자손이 아닌 경우에도 천거를 통한 초입사 기회가 열려 있었던 것이다. 이외에도 忠勳府에서는 매년 功臣의 子와 孫을 천거하였고, 성균관에서는 50세 이상으로 성균관에 오래 거관한 유생 등을 추천할 수 있었다.¹²⁾ 천거를 받아 入仕하는

10) 『經國大典』吏典 取才【蔭子弟】“每年正月 ○ 功臣及二品以上子·孫·婿·弟·姪, 〈原從功臣則子·孫〉 實職三品者之子·孫 曾經吏·兵曹·都摠府·司憲府·司諫院·弘文館·部將·宣傳官者之子年二十以上 許試叙用 欲屬錄事者聽”

11) 『경국대전』吏典 薦舉 “京·外東·西班牙三品以上 每三年春孟月 各薦三人 -三品至無職- 每年春孟月”

경우에도 음자제와 동일하게 사서 중 1서와 5경 중 1경을 선택하여 강하는 試才을 통과해야만 했다.¹³⁾

이러한 구도 하에서 중종대 초반까지도 음관의 입사 경로로는 門蔭, 保舉, 吏任取才로 인식되었다.¹⁴⁾ 그러나 사족층과 중서층의 구분이 강화되면서 녹사와 서리가 관직으로 진출하는 길은 점점 막혀 갔다. 중종대에는 서리의 입사로인 驛丞을 폐지하여 찰방으로 개편하였고, 녹사들의 수령 임용도 점점 줄어 갔다.¹⁵⁾ 역의 피폐를 서리 출신인 역승 탓으로 돌려 역승을 폐지하고 녹사 출신 수령들의 不治를 명분으로 녹사들의 수령 진출로를 막아 간 것이다. 그 결과 중종대 후반 이후 음관의 입사로는 門蔭과 保舉, 혹은 門蔭으로 대표되었다.¹⁶⁾

한편 성종 8년(1477)부터는 생원·진사의 경우 保舉 없이도 이조에서 바로 관직에 의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당시에는 입사로가 음자제취재와 천거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음자제가 아닌 생원·진사는 원칙적으로 천거를 받아야만 관직에 의망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이조가 문제를 제기하여 생원·진사는 별도의 천거나 취재없이 바로 의망할 수 있게 한 것이다.¹⁷⁾ 생원·진사시가 취재를 대신

-
- 12) 『경국대전』吏典 薦舉 “忠勤府 薦功臣子孫才堪吏任者” ; 『경국대전』禮典 奬勸 “累年居館 學問精熟 操行卓異 而年滿五十者 通考本館日講·旬課及本曹月講分數優等者 累年赴舉文科館·漢城試七度入格而年滿五十者 啓聞叙用”
- 13) 『경국대전』吏典 薦舉 “凡薦舉者 曾經試才 及已行六品以上顯官外 四書中一書 五經中一經 從自願試取”
- 14) 『성종실록』 권91, 성종 9년 4월 8일 기해 “朱溪副正 深源上書曰 … 今得人之門 不爲少矣 有曰科舉 曰保舉 曰吏任取才·蔭取才” ; 『중종실록』 권25, 중종 11년 5월 20일 경자 “參贊官金安國曰 取士之途 只有文·武科與門蔭吏任而已 … 上曰 非文武科 則皆出於吏任取才”
- 15) 김성우, 2001 『조선중기 국가와 사족』, 역사비평사, 234-238면 ; 신해순, 1986 「朝鮮前期의 京衙前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4-27면.
- 16) 『중종실록』 권26, 중종 11년 10월 20일 무진 “南袞曰 我國用人之路至廣 有保舉·蔭才” ; 『중종실록』 권45, 중종 17년 7월 27일 신미 “弘文館副提學徐厚等上疏曰 …… 且國家用人兩科之外 或以門蔭 或以保舉 入仕之路 不一其門” ; 『중종실록』 권94, 중종 36년 2월 15일 임신 “傳曰 國家任人 兩科之外 專倚門蔭保舉” ; 『명종실록』 권15, 명종 8년 10월 23일 병신 “幼學徐唵上疏 … 至於我朝 專以科舉門蔭爲取人”
- 17) 『성종실록』 권83, 성종 8년 8월 14일 무신 “吏曹啓 蔭子弟 雖無保舉 注擬敍用 而至於生員進士 無保舉則不得敍用 才藝可用者 反不如蔭子弟 請今後生員進士 雖無保舉亦敍用 以廣

한 셈이다. 이 내용은 『경국대전』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곧이어 편찬된 『大典續錄』(1493)에 수록되었고, 영조대 『續大典』(1746)에도 수록되어 있다.

중종대에도 생원·진사를 바로 임용한 사례들이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문음과 보거를 주된 입사로로 인식하였을 뿐 아니라 성종대 생원·진사를 임용한 것을 古事로 인식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생원·진사의 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못한 듯하다.¹⁸⁾

그러나 생원·진사가 유음자제에 비해 자질이 뛰어나다고 평가하고 임용을 늘리려는 움직임은 계속되었다. 그 가운데 명종 6년(1551) 경연관 尹春年이 생원·진사의 임용을 계청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척신권력의 일원인 윤춘년에게 비판적이던 史官은 윤춘년이 士流들 사이에서 人望을 얻기 위하여 이런 '善議'를 내놓았다고 평가하였다.¹⁹⁾ 그만큼 이 방안이 士流들의 호응을 얻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명종 8년(1553) 6월 윤춘년이 대사헌으로 재임 중인 가운데 사헌부에서는 有蔭子弟와 保舉人을 門蔭, 생원·진사는 公薦으로 구분하여 입사로를 운영하는 蔭官入仕法을 계청하여 국왕의 윤허를 받았다. 사헌부에서 아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요사이 인심이 예전같지 않고 국법이 크게 무너져 薦舉와 蔭子弟의 법이 도리어 재상이 私情에 따라 은혜를 베푸는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 만약 公薦과 門蔭으로 나누어 두 갈래의 길을 만들고 生員·進士는 공천에 소속시키고, 재상의 자제라도 생원·진사면 모두 공천에 소속시키며, 蔭才와 保舉는 門蔭에 소속시켜 서로 섞이지 않게 하고, 이를 영구히 지켜야할 정식으로 삼는다면 治道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²⁰⁾

取土之路 從之” : 『성종실록』 권189, 성종 17년 3월 1일 병오 “瓊仝曰 … 生員進士不試才授官 自此法之立 儒生爭慕效之 因緣請托 以求爵祿 此宜痛禁也”

18) 『중종실록』 권7, 중종 4년 2월 13일 을해 “參贊官成允祖曰 薦舉之中 已登仕版者有之 如生員·進士 沈於下流者 夫孰舉用 若有闕員 則以薦舉者 不必備三望 列書其名以受點者 成宗朝古事也 檢討官洪彥弼曰 成允祖之言是也 成宗朝參奉有闕 則以居館年高有識者 列書以進 洪湜在館 擬敦寧參奉末望而受點”

19) 『명종실록』 권12, 명종 6년 11월 18일 임인 “傳曰 經筵官尹春年所啓生員進士收用之事 言于吏曹 【史臣曰 春年 … 於是 自知見棄於公論 謂爲依附之計 發此善議 以收人望】”

문음과 보거에 기초한 『경국대전』의 초입사제도는 有蔭 여부를 기준으로 유음자제는 음취재, 유음자제가 아닌 경우는 천거로 입사로를 나누었다. 이에 비해 사현부의 안은 생원·진사는 ‘公薦’, 생원·진사가 아닌 유학은 음취재와 보거로 입사로를 나누었다. 생원·진사 여부가 음관의 입사로를 나누는 기준이 된 것이다.

공천의 구체적인 방식이 어떤 것이었는지, 또 이 방식이 얼마나 시행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임진왜란 이후부터는 생원·진사를 임용한다는 언급들이 자주 등장한다. 임진왜란 직후인 선조 32년(1599) 3월에는 음취재에 응시하는 자가 없어 생원·진사로 초입사직의 궐원을 채웠다고 하며,²¹⁾ 이해 7월에도 초입사는 생원·진사를 우선 의망하였다고 한다.²²⁾

이후 음관의 초입사에서는 점점 문음의 위상이 약화되고 생원·진사의 임용이 대세로 자리잡아 갔다. 인조 11년 이조의 啓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초입사는 비록 微官이지만 六品에 오르면 郎署와 수령이 모두 여기에서 나오니 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종조 아래로 蔭仕는 반드시 생원·진사로 備望하였는데, 그래도 인재가 누락될까 염려하여 門蔭을 따져 取才하는 법을 두었으니 괜히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세에 私情이 승하여 이른바 蔭取才是 합당한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아 뜻이 있는 선비들은 (취재에) 나가기를 꺼립니다.”²³⁾

이조의 이야기는 원래 음직에는 생원·진사를 임용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 『명종실록』 권15, 명종 8년 7월 30일 갑술 “憲府啓曰 近來人心不古 國法大毀 薦舉蔭子弟之法 反爲宰相循情市恩之物 取才之時 只問父兄之安否 非徒不識一字者 得與其選 至有代講者 以之莅職 瘦官爲多 若以公薦·門蔭 分爲二途 生員·進士 屬於之公薦 而雖宰相子弟 若生員·進士 則竝屬於公薦 蔭才及保舉 則屬於之門蔭 使不相混 永爲恒規 則大有補於治道矣”

21) 『선조실록』 권110, 선조 32년 3월 10일 기축 “吏曹啓曰 蔭取才申明舉行事 曾捧承傳 故應講之人 掛榜知委 着令呈單子 而時無一人來呈 … 傳曰 … 以生進擬差”

22) 『선조실록』 권115, 선조 32년 7월 25일 임신 “吏曹判書鄭昌衍·參判趙挺·參議宋諄啓曰 臣昌衍·臣諄等 … 都目及頃日之政 初入仕之窠 則多有之 而多以生進擬擬 有承傳得授者 不過數三人”

23) 『인조실록』 권28, 인조 11년 4월 1일 임술 “吏曹啓曰 初入仕 雖似微官 及陞六品 則郎署·守令 皆出於此 可謂重矣 祖宗朝以來 凡蔭仕必以生·進備擬 猶慮人才之或遺 設爲考蔭取才之法 意非偶然 而末世私勝 所謂蔭才 多非其人 有志之士 不屑就焉”

문음취재를 두었다는 것이다. 그 연혁을 따지자면 명백히 역사적 사실과는 부합되지 않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을 통해 이즈음에는 음취재에 대한 기억이 왜곡될 만큼 음관의 초입사 임용이 생원·진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듬해인 인조 12년 음관의 초입사 연령에 대한 규정이 새로 마련되었다. 당초 유음자제는 20세 이상이면 취재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이 때는 생원·진사는 30세 이상, 유학은 40세 이상으로 나이를 제한하여 생원·진사와 유학의 입사 연령을 구분하였다.²⁴⁾ 이를 통해서도 음관 임용이 생원·진사 임용을 중심으로 개편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규정은 19세기까지도 계속 적용되었다.

음취재는 그 사이에도 계속 시행되었는데, 영조대까지도 그 흔적이 보인다. 李灝(1681~1763)도 ‘얼마 전까지[近古]’ 음취재가 시행된 것으로 언급하였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양반들이 음취재에 응시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긴다고 지적하고 있다. 음취재를 통한 입사는 주류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이다. 이익은 재상의 자제들이 생원·진사가 되면 취재없이도 바로 초입사직에 의망되기 때문에 음취재의 효용이 없어진 것으로 파악하였다.²⁵⁾ 음취재는 『大典通編』(1785)까지는 그대로 실려 있으나 『대전회통』에는 폐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유학의 추천 임용

음관의 초입사직 임용이 생원·진사를 중심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유학의 임용에 대해서도 새로운 논의들이 등장하였다. 선조대 초반에 시행된 郎薦이 그것이다. 낭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전한다.

24) 『인조실록』 권30, 인조 12년 10월 2일 을유

25) 『승정원일기』 영조 9년 1월 5일 정해 “正言沈命說疏曰 … 至於蔭取才吏才薦 當初設法 其意儘好 而以至今日 京華士夫之子弟 鄉中有識之措大 舉皆厭避 莫不爲羞 而非文非武 無才無識之類 締交權門 因緣私徑 作一通仕之捷路 而宰相 亦以此爲鄉中親舊生色之資”；李灝(1681-1763) 『星湖僕說』 권23, 經史門 倅子 “近古有門蔭取才之規 余猶及見其人也 申明此制 有以防勢力之濫叨 然三十年一世之間 式年進士二千 又種種設增廣試 如式年之例 卽相子弟 殆無或漏而 進士則無所防限 既開捷徑 於是以取才爲辱 才不才 便成度外也”

“李鐸이 이조판서가 되었을 때 公道를 펼치고자 하여 ‘초입사는 上舍生이 아니면 으레 문음취재로 관원을 충전하는데 어진 자라면 어찌 즐거이 시험에 응하겠는가?’ 하고 郎僚들에게 이름이 알려진 선비들을 뽑게 하고 임금에게 낭관의 추천을 받은 자들은 試才를 하지 않아도 의망하도록 계정하였다.”²⁶⁾

이탁이 이조판서가 된 것은 선조 1년(1568)이었다. 당시 음관을 임용하는 방법은 생원·진사 의망과 문음취재의 양갈래가 있었는데, 이탁이 이조판서가 된 후 이조낭관들에게 幼學들을 추천하게 하여 생원·진사와 마찬가지로 試才를 생략하고 바로 의망하였다는 것이다. 음관의 초입사를 생원·진사 의망, 유학 낭천, 음취재의 세갈래로 운영한 것이다.

낭천은 ‘學生公薦’으로도 일컬어졌는데, 선조 8년에 왕명으로 폐지되었다.²⁷⁾ 하지만 인조대에도 유학을 선별 임용한 ‘幼學抄選’이라는 사례가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이조가 아뢰기를 “… 선조 초년에 이조에서 郎薦의 규칙을 만들어 蔭取才를 거치지 않아도 擬望할 수 있었는데 세상의 논의가 常例와 다른 것을 꺼려하여 결국 중간에 폐지되었습니다.反正 후에 지금의 영부사인 오윤겸이 이조판서가 되었을 때 경외의 학생 중에 才行이 있는 인물들을 찾아 이름을 써서 계하를 받아 ‘幼學抄選’이라고 명명하고 생원·진사, 음취재 출신들과 함께 의망하였습니다. 이것은 낭천의 규정에 비하여 더욱 완비된 듯합니다. 지금 그들을 다 임용하여 남아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뿐입니다. 본조 당상과 낭청이 다시 모여 상의하여 합당한 인물을 얻어 備望하여 차정하기를 바랍니다.”하니 임금이 ‘아뢴대로 하라’고 하였다.²⁸⁾

26) 『선조수정실록』 권3, 선조 2년 6월 “及李鐸判銓 務張公道以爲 初入仕者 若非上舍生 例以 門蔭試才 而得補官 若賢者 豈肯屑就乎? 乃使郎僚 選知名之士啓請 被郎薦者 雖不試才 而 擬望”

27) 『선조수정실록』 권9, 선조 8년 7월 “時 吏曹以郎薦人擬望 上問吏曹曰 學生公薦 是大典法乎 吏曹回啓曰 有志之士 不就蔭試 故郎官各薦人才 謂之郎薦者 有承傳而已 大典則無此法矣 上曰 恐有後弊 自今勿施 此 李鐸判吏曹時 採士論議大臣 已行之事 上固稔知之矣 是時 上厭土類建白 故特問以發之”

28) 『인조실록』 권28, 인조 11년 4월 1일 임술 “吏曹啓曰 … 故曾在宣廟初年 銓曹又立郎薦之規 雖非蔭才 亦得擬望 而流俗之論 嫌其異常 遂至中廢 識者惜之 反正之後 今領府事吳允謙 爲銓長時 訪問京外學生中有才行之人 列名啓下 名曰幼學抄選 與生進·蔭才 相參擬望 此則

이조의 이야기는 인조반정 후 오윤겸이 이조판서로 있을 때 경외의 유학 중에 임용할만한 인물을 뽑아 국왕의 재가를 받은 후 취재없이 바로 의망하였다는 것이다. 인조 11년 당시 이조는 이를 이어 당상과 낭청이 상의하여 유학을 뽑아 의망 할 것을 계청하였다. 그 결과 인조 11년과 인조 17년에 유학초선이 시행되었다.²⁹⁾ 유학초선은 낭천과 마찬가지로 이조에서 유학들을 바로 초입사직에 의망하는 것으로 유음자제가 아닌 유학들에게도 취재없이 초입사직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였다는 데 주요한 의의가 있다.

이후 유학은 음취재나 鄉薦을 통하지 않으면 벼슬에 나가지 못한다고 이야기된 것을 보면 유학초선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지는 못한 듯하다.³⁰⁾ 그러다가 숙종 1년에 尹鑄가 유학의 과격 임용을 주장하면서 다시 이조에서 임용 가능한 유학을 초록하여 의망하게 되었다.³¹⁾ 형식면에서 보면 낭천이나 유학초선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이로부터 이조에서 유학을 자유롭게 의망할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렸다. 다만 이와 관련된 법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유학의 초입사 연령은 인조 12년 40세 이상으로 법제화되었다. 생원·진사의 30 세와는 10년의 차이가 있었다.³²⁾ 이에 대해 숙종 초반 尹鑄는 생원·진사와 유학의 자질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유학의 임용 연령을 낮출 것을 주장하였다. 그 결과 유학의 임용 연령이 3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숙종 4년

比郎薦之規 尤似完備 而今則用之已盡 所餘只有一人 請本曹堂上·郎廳 更爲會同相議 得其可合人 以備擬差 答曰 依啓”

- 29) 『승정원일기』 인조 17년 12월 19일 신축 “吏批啓曰 幼學中有學有行 可以風厲者 久欲抄選 而非但聞見孤陋 未經啟稟 故未卽爲之矣 今當都目 表表可用者 依前例抄啓 何如 傳曰 依啓”
- 30) 『승정원일기』 효종 6년 12월 22일 임신 “(吏曹判書李厚源)又所啓 … 蓋以幼學無蔭取才 則得職無路 欲以前教官 爲得官之階梯也” ; 『승정원일기』 숙종 1년 4월 5일 계사 “吏曹參議尹鑄所啓 臣待罪銓曹 雖有可用之人 掴於規例 不得收用 今若非生進無鄉薦 雖有才能 而不得參 初入仕之望 固無可以收拾人才矣”
- 31) 『승정원일기』 숙종 1년 4월 5일 계사 “右議政曰 祖宗朝舊章 不可輕變 且日後秉政者 若非公正之人 則必有私勝混雜之弊矣 令吏曹抄錄可用者 與大臣相議稟達後 使之擬望 宜矣 上曰 依爲之” ; 『승정원일기』 숙종 1년 7월 9일 을미 “鑄曰 若然則請依前日所陳 幼學可合入仕者 自銓曹列名 送於備局 經大臣考閱後 啓下本曹 以爲調用之地 何如 上曰 依爲之”
- 32) 『인조실록』 권30, 인조 12년 10월 2일 을유

에 유학의 임용 연령은 다시 40세 이상으로 복구되어 계속 준수되었다.³³⁾ 10년이라는 시차에서 드러나듯 음관의 임용에서는 생원·진사와 유학 사이에 확연한 구분이 있었다. 게다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음관의 초입사직은 대부분 생원·진사를 임용하는 자리였고, 유학을 임용하는 자리는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3) 천거와 국가유공자 후손 임용

조선후기에는 음취재가 점차 유명무실화되어 간 반면 천거제는 보다 활성화되었다. 천거 역시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온 인사제도의 하나로 조선초기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른바 사람들의 공론에 입각하여 성리학적 의리를 탐구하고 실천하는 인물들을 임용한다는 논리가 강화되면서 천거제에 대한 관심도 한층 강화되었다. 특히 명종 21년 척신정권이 붕괴되고 이른바 사림정권이 등장하면서 천거제가 각광을 받았다. 이때부터 遺逸薦, 孝行薦, 學行薦 등 다양한 명목의 천거가 수시로 시행되었다. 이 제도들은 別薦과 鄉薦으로 수렴되어 갔다.³⁴⁾

別薦은 왕명에 의거하여 특정한 명목에 부합하는 인물을 추천하게 한 제도이다. 선조·인조대에도 시행 사례가 보이지만 효종 4년(1653) 6가지 천거 명목을 제시한 六條別薦을 시행한 후부터 숙종대 전반까지 자주 시행되었다. ‘潛心義理 有學行’처럼 덕목을 구체화한 薦目에 맞추어 대개 2품 이상 관원과 언론 3사의 장관, 관찰사가 경향의 인물 2-3명씩을 추천하였다. 비변사에서는 추천명단을 검토한 후 ‘擢用’, ‘除授’, ‘陞敍’ 등 임용방식별로 항목을 나누어 임용 후보자를 선정하였다.³⁵⁾

별천의 사례를 보면 초입사 대상자가 전체 피천자의 2/3 가량을 차지하였다. 숙종 15년에는 전체 16명 중 초입사 후보자가 14명이었고, 숙종 32년에는 35명 가운데 23명이 초입사 후보자였다. 생원·진사와 유학의 숫자는 숙종 15년에는 각각 5

33) 『숙종실록』 권3, 숙종 1년 3월 19일 정축; 『숙종실록』 권6, 숙종 3년 7월 13일 무자

34) 17세기 천거제의 정비에 대해서는 정구선, 1995 『朝鮮時代 薦舉制度研究』, 초록배, 163-175면 참조

35) 『승정원일기』 영조 즉위년 10월 30일 경자 “鳳輝曰 別薦之人 不可盡用 故例自廟堂 分等抄出 啓下吏曹後 始爲調用矣”

명, 9명, 숙종 32년에는 5명, 18명으로 생원·진사보다는 유학의 비중이 높았다.³⁶⁾ 생원·진사에 비해 유학은 입사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추천자들이 유학을 보다 비중 있게 추천한 것으로 보인다.

별천은 효종대부터 숙종대 전반까지는 대략 2-4년에 한차례씩 시행되었다. 하지만 피천된 인물의 적합 여부와 私情의 개입 여부를 둘러싸고 잡음이 계속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숙종 4년에는 별천을 폐지하라는 왕명을 내리기도 하였다.³⁷⁾ 별천은 이후에도 계속 시행되기는 하였지만 숙종대 중반 이후 현저하게 사례가 줄어들었다.

보다 안정적으로 시행된 것은 鄉舉里選의 이념에 따라 시행된 鄉薦이다. 향천은 지역사회에서 公議로 인재를 추천하는 제도로 선조대와 인조대에도 사례가 보이는 데, 효종이 즉위한 후에 3년에 한차례씩 관찰사가 추천 단자를 올리도록 제도화되었다.³⁸⁾ 향천의 수자는 하삼도는 3명, 나머지 5도는 2명씩, 총 19명으로 그리 많지는 않았다.

『수교집록』과 『속대전』에 수록된 향천은 同鄉人이 保舉하는 방식으로 효종 즉위년에 수령을 薦主로 한 것과 차이가 있다. 하지만 민간에서 보거하는 방식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³⁹⁾ 영조대에는 수령의 추천을 받아 감사가 일정 인원을 추천하는 방식의 道薦으로 운영되었다. 도천은 19세기 관찰사가 올린 狀啓謄錄에도 실려 있어 꾸준히 시행된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명칭이나 내용이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지방인의 천거에는 御史薦도 활용되었다.⁴⁰⁾ 암행어사는 지방에 파견되어 임무

36) 『비변사등록』 숙종 15년 1689년 6월 3일(음); 『비변사등록』 숙종 15년 1689년 6월 9일(음); 『승정원일기』 숙종 32년 4월 10일 정유

37) 『승정원일기』 숙종 4년 9월 13일 신해

38) 『승정원일기』 효종 즉위년 11월 23일 무인

39) 『續大典』 更典 除授 “各道前銜及生進幼學之才行表著者 每式年歲首 一鄉人保舉于守令 報觀察使抄薦 下三道 無過三人 上五道 無過二人 各其名下懸錄其才行 生·進則年三十以上 幼學則四十以上 前銜則不拘年歲 或所薦人名實不副年歲冒錄者論罪 一鄉保舉人 以貢舉非其人律論 觀祭使·守令罷職”

를 수행한 후 출장보고서인 書啓와 別單을 함께 올리는데, 이 별단에 해당 지역의 인물에 대한 천거도 포함되어 있었다.⁴¹⁾ 御史薦은 繡薦이라고도 일컬었다.

이외에 조선전기부터 시행되어 온 성균관 유생의 천거도 계속 되었다. 『경국대전』에는 50세 이상으로 여러 해 동안 居館하거나 성적이 우수한 인물을 서용하도록 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⁴²⁾ 이 제도는 인조대 이전에 이미 都目政 때 성균관 유생들이 圈點을 통해 3인의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⁴³⁾ 연 2회의 성균관 공천, 곧 館薦이 정례화된 것이다. 관천도 치폐를 거듭했는데, 趙持謙이 대사성으로 있던 숙종 8년부터는 계속 시행되었다.⁴⁴⁾

한편 임진왜란 이후부터 부상한 清白吏, 先賢, 戰亡人,冤死人 등 국가유공자의 후손을 임용하는 방법도 정비되었다. 이전에도 개별적으로 후손을 임용한 사례는 있으나 선조 33년부터는 이들의 임용을 인사의 주요 원칙 중 하나로 삼았다. 당초에는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고 이조에서 임시로 해당인물의 후손을 탐문하여 인사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名簿에 기재하였다.⁴⁵⁾ 하지만 숙종 20년 좌의정 박세채의 제안으로 문헌에 근거하여 후손을 녹용할 대상 인물들의 명단을 초록하여 ‘先賢案’

40) 『승정원일기』 영조 2년 1월 28일 신유 “鎮遠曰 … 臣意則向者別薦 亦爲無益 若於御史薦鄉薦中 別擇以用 似好矣”

41) 『승정원일기』 숙종 13년 3월 26일 갑진 “奎齡啓曰 … 今方待罪銓曹佐貳之任 取考嶺南前後御史別單薦舉之人 皆是臣所聞而較著者也 … 上曰 御史別單 異於尋常別薦 今後勿復如前拋棄 各別隨闕注擬 宜矣”

42) 『經國大典』 禮典 嘉勸 “累年居館學問精熟操行卓異而年滿五十者 通考本館日講·旬課及本曹月講分數優等者 累年赴學文科館·漢城試七度入格而年滿五十者 啓聞敍用”

43) 『인조실록』 권30, 인조 12년 10월 12일 을미 “吏曹啓曰 … 只令本館生進等 各爲圈點 取其點數最多者三人 移文本曹 入啓擬望 謂之公薦”

44) 李萬敷(1664~1732), 『太學盛典』 권3, 齋中公薦; 『太學志』 권8, 選舉 公薦; 尹愬『無名子集』『泮中雜詠』

45) 『선조실록』 권131, 선조 33년 11월 25일 을축: 『선조실록』 권133, 선조 34년 1월 7일 병오; 『선조실록』 권183, 선조 38년 1월 4일 기묘 “諫院來啓曰 初入仕 為發身之階梯 不可不慎擇 … 經變以後 忠臣·烈士 伏節死義者 不爲不多 而此等子孫 未聞有錄用之舉 至如先賢後裔·清白吏子孫及草野經明行修之士 亦未有收錄者 聖朝闕典 無大於此 請令吏曹 廣加搜訪 抄擇置簿 以備選用 … 答曰 允”

과 같은 별도의 명부를 작성하였다.⁴⁶⁾ 이 명부는 여러 차례 개정하였는데, 영조 2년 유척기는 당시 명부에 선현·청백리·공신·전망·원사인 900여 명이 수록된 것으로 언급하였다.⁴⁷⁾ 고종대에 편찬된 『初仕調用』에는 인명을 특정하지 않은 강화도의 순절인, 공자의 후손과 함께 문묘종향선현, 유현, 사절인, 원사인, 전망인, 청백리, 승전인 등 245명의 명단이 수록되어 그 수가 확연히 줄어들어 있다.⁴⁸⁾

후손들을 임용할 때에는 누구를 등용할 것인지가 논란이 되었다. 당초에는 유공자들의 奉祀를 지원한다는 의도 하에 적장손을 임용하게 하였으나 숙종 7년(1681) 관료로서의 자질에 따라支孫도 임용 가능하게 하였다. 그 후 몇 차례 번복을 거쳐 영조 5년에 다시 적장손 서용을 원칙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이조에서 지손을 의망하거나 지손이 적장손으로 가장하여 임용된 경우 처벌하도록 입법하였다. 이 내용이 『속대전』에 수록되었다.⁴⁹⁾ 음취재가 사문화된 조선후기에도 ‘門蔭’으로 입사한 것으로 언급한 사례들이 보이는데, 이는 청백리, 선현 등의 봉사손으로 등용된 경우를 가리킨다.⁵⁰⁾ 이에 더하여 꼭 적장손이나 봉사손이 아니라도 국왕이 특명으로 支孫을 임용한 경우도 많이 보인다.

이조에서 의망하기 전에 국왕이 특정인을 지목하여 서용을 명하는 경우도 상당히 자주 있었다. 이런 경우는 기록 상에 ‘承傳’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국왕이 먼저 임용을 하교하는 경우도 있으나 大臣들이 국왕에게 특정인물을 추천하여 국왕이 임용을 하교하는 경우도 많았다. 수시로 인물을 천거하는 것은 대신들의 직무 중 하나였다. 대신들이 추천한 경우는 大臣薦이라고 일컬었다.⁵¹⁾

46) 『승정원일기』 숙종 20년 10월 8일 임인

47) 『승정원일기』 영조 2년 3월 27일 기미

48) 『初仕調用』(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K2-2061)

49) 『속대전』 更典 除授 “從享先賢·功臣·儒賢·戰亡·冤死·清白吏嫡長孫外 毋得冒擬初仕父在則其子 毋得以嫡長論”

50) 『승정원일기』 영조 21년 7월 12일 임오 “鏞曰 臣以門蔭 仕顯陵參奉 移本職矣 上曰 何門蔭耶 鏞曰 臣以佐理功臣沈瀚奉祀孫 有蔭爲仕矣”

51) 『인조실록』 권1, 인조 1년 4월 11일 경오 “守倫 … 曾以大臣薦 晚就蔭仕” ; 『효종실록』 권10, 효종 4년 3월 13일 기묘 “時白又曰 臣未及薦人 方極未安 而大臣薦人 恐不必隨例而爲之也 上曰 然 薦賢固大臣之事也” ; 『승정원일기』 영조 14년 1월 23일 병자 “(李光佐)

이상에서 보듯 『경국대전』에서 『속대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음관의 초입사 방식은 그 주류적인 흐름이 변화하였다. 조선초기에는 有蔭 여부에 따라 음취재와 천거로 나누어 운영하였으나 명종대를 거치며 생원·진사 임용과 음취재, 천거로 개편되었고, 조선후기에는 점차 음취재가 실효를 상실하면서 이조의 생원·진사, 유학 의망과 각종 천거로 재편되었다.

물론 이상에서 언급된 각종 규정에 해당되는 인물들이 다 의망되거나 임용된 것은 아니다. 이상의 규정은 이조에서 의망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의 범주였을 뿐이다. 이조판서는 이상과 같은 자격을 갖춘 인물들 가운데서 일부를 선택하여 실제 초입사직의 의망에 올렸다. 실제 의망이 이루어진 상황은 뒤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음관 초입사직의 구성

1) 17세기 음관 초입사직의 개편

음관으로 처음 벼슬살이를 시작할 때 받을 수 있는 음관의 초입사직은 법제로 정해져 있었다. 그 대부분은 이조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동반직이었으며, 『속대전』을 기준으로 보면 병조에서 관할하는 서반직은 世子翊衛司 洗馬 2명과 四山監役 4명이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음관 초입사직은 거의 대부분 이조에서 인사를 담당하였다. 인조 11년 당시 이조에서 관장한 음관 초입사직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었다.

“음관의 初入仕 원수는 경외의 參奉이 70명, 義禁府都事が 10명, 別坐가 29명, 繕工 監監役이 6명, 童蒙敎官이 4명, 內侍敎官이 2명, 水運判官이 2명, 察訪이 27명입니다. 이외에 天文兼敎授, 地理兼敎授, 命課敎授, 治腫敎授, 都案廳郎廳을 임시로 설치하여 합계가 165명입니다.”⁵²⁾

又所啓 別薦命下之後 政府錄事 請受薦單於臣 而臣旣忝列大臣 不必用薦單 欲一舉名論薦於
筵中矣”

위에서 언급된 관직은 직과의 성격과 입사경로, 품계 등을 기준으로 보면 네 부류로 나뉜다. 첫 번째 부류는 『경국대전』에 수록된 종9품 정직인 참봉이다. 참봉은 京各司와 各陵, 各殿 등에 소속된 정직으로 녹과를 받으며, 종8품직, 종7품직을 거쳐 6품으로 승진하였다. 법정근무일수는 종9품직, 종8품직, 종7품직에서 각 450일로, 총 1,350일(45개월)을 근무한 후 6품직으로 승진하였다. 또 한 부류는 같은 종9품이지만 『경국대전』 반포 이후에 새로 가설된 자리로, 선공감가감역, 동몽교관, 내시교관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은 番次에 따라 遞兒祿을 받는 대신 승진 없이 30개월을 근무한 후 바로 6품직으로 승진하였다.⁵³⁾ 참봉에 비해 근무 조건이 나쁜 대신 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았다.

〈표 1〉 인조 11년 당시의 읍관 초입사직

품계	직명	인원
종9품	참봉	70명
	선공감감역(6명), 동몽교관(4명), 내시교관(2명)	12명
종4품-종6품	의금부도사(10명), 별좌(29명), 수운판관(2명), 찰방(27명)	68명
雜歧	천문겸교수, 지리겸교수, 명과교수, 치종교수, 도안청낭청 등	15명

또 한 부류는 품계 상 종4품-종6품에 해당되는 참상직 무록관으로 의금부도사, 별좌, 찰방, 수운판관이 이에 해당된다. 이 직과들은 세조 2년 官制改革 이후 有蔭子弟들의 초입사직인 成衆官, 權務職, 權知職이 혁파된 후 문음 초입사직으로 운영되었다.⁵⁴⁾ 역시 체아록을 받으며 각각의 법정기간동안 장기근무한 후 바로 6품직

52) 『인조실록』 권28, 인조 11년 7월 12일 임인 “吏曹判書崔鳴吉上箚請曰 … 而蔭官初入仕原數 京外參奉七十員 · 禁府都事十員 別坐二十九員 繕工監役六員 童蒙敎官四員 內侍敎官二員 · 水運判官二員 · 察訪二十七員 · 此外權設天文 · 地理 · 命課敎授 · 治腫敎授 · 都案廳郎廳通計一百六十五員”

53) 『續大典』 吏典 京官職 權設職 “權設職竝受司果以下遞兒祿 仕滿九百 陞六品 從九品內侍敎官二員 童蒙敎官四員” ; 『續大典』 吏典 京官職 正三品衙門 繕工監 “假監役 從除授次第不計仕 陞實官 通計假官仕 滿九百 陞六品”

54) 임민혁, 앞의 책, 76-82면.

으로 승진하였다. 이상의 종9품직과 참상직 무록관을 합친 150과가 이조에서 관장하는 東班의 초입사직이었다.

나머지 한 부류는 雜歧 혹은 各岐로 분류되는 직과로 이조와 병조가 아닌 해당 관서에서 취재를 통해 임용하던 자리다. 관상감 소속의 천문겸교수·지리겸교수·명과겸교수, 전의감 혹은 내의원 소속의 治腫教授, 軍籍 작성을 담당하던 병조 都案廳 소속의 假郎廳 등이 있었다. 이 자리는 이른바 '本業人'으로 일컬어지던 전문 직종인뿐 아니라 특별히 해당 분야에 조예가 있는 인물을 특채하기도 하였는데, 대개는 中庶출신이 임용되었다. 이들 역시 체아록을 받으며 법정 근무기간을 채우면 동반 6품직에 제수되었다. 이 때문에 이조에서는 함께 거론하였으나 이들은 이조에서 관장하는 동반 초입사직은 아니었다. 법전에서도 이들은 계속 雜歧 혹은 各岐로 구분하였다.

인조 11년 당시 이조는 6품직으로 승진할 때 발생하는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음관 초입사직의 자리수를 줄이는 관제 개편을 단행하였다. 주방향은 원래 참상직인 무록관직을 참상직으로 개편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개편 작업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되풀이되어 인조 11년 당시 초입사직이던 무록관 참상직은 숙종 39년까지 모두 참상직이나 종8품직으로 개편되었다. 이로써 음관 초입사직은 종9품직으로 단일화되었다. 그 후 영조 6년에 의금부에 참하도사 5인을 復設했지만 이를 종9품직으로 개편하여 음관의 초입사직은 계속 종9품직으로 제한되었다.⁵⁵⁾

한편 왕릉이 늘어남에 따라 참봉의 숫자도 계속 늘어나 참봉의 8품직 승진에 적체가 발생하였다. 또 과거 시행이 늘어나면서 문관의 숫자도 늘어나 문관 참하관의 인사 적체 문제도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숙종대부터 종9품인 참봉직을 종8품의 봉사나 별검, 종7품의 직장, 종5품의 습으로 개편하고, 그 일부를 文窠로 전환하는 개편작업이 여러 차례 진행되었다. 그 결과 경각사의 참봉은 대부분 소멸되었고, 원래 2명씩을 두었던 능참봉과 전참봉은 경종 4년과 정조 즉위년의 개편을 거쳐 능·전별 1명으로 줄어들었다.⁵⁶⁾

55) 『승정원일기』 영조 6년 4월 22일 경신.

56) 인조·숙종대 관제 개편에 대해서는 임민혁, 앞의 책, 128-142면 참조. 능관제 개편에 대

반대로 영조대에는 각園의 수봉관이 신설되었다. 영조 29년 속빈최씨의 昭寧園에 종9품의 守奉官을 신설한 이후로 각園에 수봉관을 두는 것이 제도화되어 그 수가 계속 늘어났다.⁵⁷⁾ 이에 따라 『대전통편』에는 음관 초입사직으로 각원 수봉관이 추가되어 있다. 대신 내시교관은 정조 3년 산림 송덕상의 계청으로 혁파되었다.⁵⁸⁾

17~18세기의 개편 과정을 거쳐 『속대전』과 『대전통편』에 수록된 음관의 동반 초입사직은 『속대전』 65과, 『대전통편』 62과로 인조 11년 당시의 150과에 비해 2/5수준으로 줄어들었다.

〈표 2〉 조선후기 음관의 東班 初入仕職

직명	인조 11년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
參奉	各陵	70	41	34
	各殿		5	4
	各司		5	5
	永祐園		-	1
	5部		-	-
	소계	70	51	44
義禁府都事	10	5	5	-
內侍敎官	2	2	-	-
童蒙敎官	4	4	4	4
繕工監(假)監役	6 ⁵⁹⁾	3	3	3
別坐	29	-	-	-
水運判官	2	-	-	-
察訪	27	-	-	-
各園守奉官	-	-	6	4
합계	150	65	62	61

해서는 김충현, 2018 「『明陵先生案』을 중심으로 본 조선후기 陵官의 변화와 운용」, 『장서각』 39, 202-204면 부표 조선후기 각종 능관체제의 변화 참조.

57) 『영조실록』 권80, 영조 29년 9월 7일 기미

58) 『승정원일기』 정조 3년 1월 29일 갑인

59) 인조 11년 이조의 계사에서는 선공감감역 6명을 모두 초입사직으로 언급하였다. 선공감감역은 감역 3명과 가감역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감역 3명이 초입사직이며, 감역은 궐원이 발생하면 가감역을 입사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용하였다.

조선후기 음관의 동반 초입사직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참봉이었다. 『속대전』을 기준으로 보면 음관 초입사직 65과 중 참봉은 능참봉 41과, 전참봉 5과, 각사참봉 5과 등 총 51과로 78.5%를 차지한다. 이외에 병전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國喪 중에는 魂殿 참봉을 따로 두었다. 참봉은 음관 초입사직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 외의 의금부도사, 내시교관·동몽교관, 선공감 가감역, 각원 守奉官 등은 단일 직과로 그 수는 많지 않았다.

이외에도 음관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더 있었다. 제도상으로는 大君師傅와 王子師傅도 있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영조대 이후에는 임용한 일이 없었다. 또 서반 초입사직인 世子翊衛司의 종9품 洗馬 2인과 四山監役 4명도 있었다. 세마는 『경국대전』에 규정된 정직으로 이미 세종대에도 음관의 초입사직으로 활용되었다.⁶⁰⁾ 사산감역은 『경국대전』에서는 병조에서 軍職人을 임용하되 동반의 예에 따라 遷轉하도록 하였는데 『속대전』에서는 음관의 초입사직으로 명시되어 있다.⁶¹⁾ 선조 32년 선공감감역, 사산감역, 세자의위사 참하관을 음취재를 거치지 않고 임용하는 초입사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아 사산감역은 이 이전에 이미 음관 초입사직으로 자리잡았던 것으로 보인다.⁶²⁾ 다만 사산감역은 영조 30년에 四山參軍으로 개편되어 武官職이 되었다.⁶³⁾ 결국 음관의 서반 초입사직은 世子翊衛司의 洗馬 2인만 남게 되었다.

2) 음관 초입사직의 직과별 자격 요건

17세기 이후 음관의 초입사직은 종9품직으로 통일되었다. 그런데, 직과별로도 임용에 필요한 별도의 자격요건이 있었다. 이에 대한 규정은 『속대전』(1746)과 『대전통편』(1785)에도 부분적으로 실려 있으나 具允明이 편찬한 『典律通補』에 보다

60) 『성종실록』 권84, 성종 8년 9월 11일 을해 “致仁 清州人 左議政確之子也 正統九年 以門蔭授世子右洗馬”

61) 『經國大典』工典 栽植 “監役官山直 兵曹定之 - 監役官 軍職人 依東班 計仕遷轉-” ; 『속대전』 병전 경관직 散職 “四山監役官四員 分掌都城標內東·西·南·北道 蔭官初仕 受遞兒軍職祿 ○ 仕滿九百 陞六品”

62) 『선조실록』 권110, 선조 32년 3월 10일 기축

63) 『승정원일기』 영조 30년 9월 23일 기해

종합적으로 살펴 있다.⁶⁴⁾ 이를 『속대전』과 『대전통편』의 인원수와 함께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에서는 자격 요건에 따라 생원·진사를 임용하는 자리는 生員·進士窠, 유학(학생)을 임용하는 자리는 幼學窠, 敦寧親을 임용하는 돈녕참봉은 敦寧窠, 중서총을 임용하는 자리는 中庶窠, 忠義衛가 담당하는 각묘 守衛官 출신을 임용하는 자리는 忠義窠로 지칭하였다.⁶⁵⁾

〈표 3〉 『전률통보』의 각과별 자격 요건과 『속대전』·『대전통편』 수록 인원

구분	직명	續大典	大典通編	자격	비고
生員·進士窠 (속대전 59과)	各殿參奉	5명	4명	30세 이상	從享先賢·功臣·儒賢·戰亡·冤死·清白吏嫡長孫 제외
	各陵參奉	31명~41명	34명~34명		
	童蒙敎官	4명	4명		
	內侍敎官	2명 ⁶⁶⁾	-		
	世子翊衛司 洗馬	2명	2명		
	義禁府 參下都事	5명	5명		
	永祐園 參奉	-	1명		
소계		59명	50명		
幼學窠 (속대전 7과)	繕工監 假監役	3명	3명	40세 이상	
	四山監役	4명 ⁶⁷⁾	-		
	各園 守奉官	-	蔭窠 3명	30세 이상	
	소계	7명	7명	-	
敦寧窠 (속대전 1과)	敦寧參奉	1명	1명	30세 이상	
中庶窠 (속대전 4과)	典獄署 參奉	2명	2명	[생원/진사30세 이상]	
	禮賓寺 參奉	2명	1명		
	소계	4명	3명		
忠義窠	順康園 守奉官	-	1명	각묘 守衛官 久勤者	
	禮賓寺 參奉	-	1명		
	소계	-	2명		

64) 『續大典』吏典 除授; 『大典通編』吏典 除授; 『典律通補』吏典 京官格式

65) 敦寧窠, 中庶窠, 忠義窠는 당대에도 사용된 표현이다. 『승정원일기』 영조 12년 5월 30일 계해 “在魯曰 敦寧只懸於敦寧窠”; 『승정원일기』 영조 4년 6월 26일 을사 “淳曰 … 郵官有三岐 文窠蔭窠中庶窠是也”; 『승정원일기』 정조 5년 11월 5일 계묘 “命善曰 宗親後裔極甚零替 不沾寸錄 誠可矜 忠義窠許令參用 足爲審恤之道”

66) 내시교관은 정조 3년에 혁파되었다. 『정조실록』 권7, 정조 3년 1월 29일 갑인

생원·진사과는 인조 12년에 제정된 연령제한 규정을 따라 30세 이상의 생원·진사를 임용하던 자리다. 『속대전』을 기준으로 보면 동반 초입사직 65과, 서반 초입사직 6과, 총 71과 가운데 각殿과 각陵의 참봉 46과, 의금부도사 5과, 教官 6과, 洗馬 2과 등 총 59과, 83%가 생원·진사과이다. 곧 음관 초입사직은 거의 대부분이 생원·진사과로 음관은 대부분 생원·진사를 충원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었다.

이중 각전·각능의 참봉과 의금부도사는 이미 인조대 이전부터 생원·진사과로 인식되었으며, 의금부도사는 그 중에서도 극선하는 자리로 일컬어졌다.⁶⁸⁾ 이와 달리 세자익위사 세마나 내시교관, 동몽교관은 원래 유학도 임용될 수 있는 자리였다. 동몽교관의 경우 효종대 이전에는 幼學의 자리로 일컬어졌거니와⁶⁹⁾ 세자익위사의 洗馬에도 유학을 임용한 사례가 있었다.⁷⁰⁾ 그러나 지속적으로 생원·진사의 임용을 확대하면서 영조대 초반에 생원·진사과로 자리잡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유학과는 『속대전』을 기준으로 할 때 71과 중 8과에 불과하였다. 유학이 음관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은 매우 좁았던 것이다. 직과별로 임용 연령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먼저 선공감 가감역과 사산감역은 인조 12년의 규정을 따라 40세 이상을 임용하였다. 『승정원일기』의 임용 기록과 『사마방목』을 비교해 보면 이미 인조 때부터 생원·진사로 감역이 된 경우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숙종 4년에 유학으로 蔭仕한 자는 선공감감역과 사산감역의 예에 따라 육품으로 승진할 때 試講한다는 규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이전부터 감역은 유학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⁷¹⁾ 경종대에는 감역이 학생을 의망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로 일컬어졌다.⁷²⁾ 영

67) 사산감역은 영조 30년 사산참군으로 개편되어 武窠로 전환되었다. 『승정원일기』 영조 30년 9월 23일 기해

68) 『인조실록』 권28, 인조 11년 7월 12일 임인 “吏曹覆啓曰 … 參下官中 如陵參奉 以生進除授 而七八年後 方出六品” ; 『광해군일기』 권110, 광해군 8년 12월 9일 을사 “禁府啓曰 今後禁府都事以生進有名望者備擬事 奉承傳施行何如 傳曰 允”

69) 『승정원일기』 효종 3년 10월 27일 을축 “太和曰 童蒙教官 自前吏禮同議 以幼學備望矣 今後勿論生進 · 幼學 極擇差出 以爲勸課之地 何如 上曰 言于該曹 依所啓爲之”

70) 『승정원일기』 영조 1년 3월 6일 갑진 “洪致中曰 洗馬擬望 連以生進 而雖未生進 才德俱備 年滿四十 則差出之規 前或有之 故今番洗馬差出時 擇出門閥才望實 合是任者 幼學二人矣 物論 或以爲非矣 上曰 雖是幼學 苟有才德擇擬 可也”

조 29년에 신설된 각園의 守奉官은 유학을 임용하되 陵參奉에 준하여 일반적인 규정과 달리 30세 이상을 임용하였다.⁷³⁾

돈녕과는 王親과 外戚으로 구성되는 돈녕부의 참봉으로 법제로 규정된 왕실의 친인척만 임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학과와는 성격이 달랐다.⁷⁴⁾ 영조 초반까지 10대-20대 임용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당초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가 영조대 중반에 30세 이상 임용규정을 새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⁷⁵⁾

법전에는 규정이 없지만 음관 초입사직 가운데 중인과 서얼을 임용하는 中庶窠도 있었다. 영조 18년 당시에는 한성부의 5부 참봉 10과가 중서과였다. 그리고 이를 봉사로 개편하면서 이전에 혁파된 예빈시 참봉과 전옥서 참봉 4과를 복구하여 중서과로 삼았다.⁷⁶⁾ 실제 임용된 인물들을 보면 생원·진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30대의 인물도 다수 확인되어 임용 자격은 생원·진사과와 마찬가지로 생원·진사 30세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忠義窠는 順懷墓 등 각묘의 수묘관인 守衛官 출신을 임용하는 자리를 말한다. 수위관은 숙종 34년에 처음 설치하였는데,⁷⁷⁾ 처음에는 서얼을 單望으로 임명하다

71) 『승정원일기』 숙종 4년 8월 8일 병자 “又啓曰 幼學蔭仕者 依繕工四山監役例 六品陞出時試講事 前已定奪於榻”

72) 『승정원일기』 경종 2년 7월 5일 무자 “錫恒曰 生·進則例爲通擬 幼學則只許監役望”

73) 『승정원일기』 영조 30년 1월 11일 신유 “傳曰 守奉官事體 與守衛官有間 勿以忠義爲之 其陞差 一依參奉例爲之 而以幼學年滿三十擬差事 分付該曹”

74) 『승정원일기』 영조 50년 3월 16일 기사 “洪樂純 以吏曹言啓曰 敦寧府參奉洪大容呈狀內新除本職 無敦寧 照例遞改云 旣無敦寧 則揆以格例 不可仍置 今姑改差 何如 傳曰 允”

75) 金孝大(1721~1781)는 영조 13년(1737) 17세로 돈녕참봉에 제수되었으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呈辭하였는데, 3년 후인 영조 16년에 20세로 다시 돈녕참봉이 되었다. 영조 20년(1744) 돈녕참봉이 된 徐魯修(1720~1787)도 25세였다. 이에 비해 영조 21년 鄭養淳(1712년생, 1745) 아래 金器大(1714년생, 1746), 李顯永(1730~?, 1761), 洪大容(1731~1783, 1774), 李萬運(1723~1797, 1782) 등은 모두 30세 이상이어서 영조 21년 즈음에 연령 규정을 새로 만들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76) 『승정원일기』 영조 18년 10월 14일 기해 “上曰 旣改作部都事之後 兩班名南行爲之 則中庶輩 能無失望乎 若魯曰 典獄·禮賓奉事二窠 降爲參奉 則合爲四窠 此窠依部參奉用之 中庶輩 似不落莫矣 … 上曰 部官變通 草記當下 而禮賓·典獄參奉 無使歸於士大夫 倘中庶無缺 望 可也”

가 영조 6년에 양반으로 3망을 갖추어 임용하고, 매도목에 1명씩 初入仕職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⁷⁸⁾ 그러나 양반들이 이 자리를 기피하여 영조 11년(1735) 嫫長忠義로 차정하고 50삭 근무 후에 承傳을 받아 초입사직에 제수하도록 제도화하였다. 영조 18년 전옥서 참봉을 복설한 후에는 이 자리에 수위관 출신을 임용하였다가 영조 24년부터는 전옥서와 예빈시 참봉 중 한 자리에 임용하도록 하였다.⁷⁹⁾ 그러나 이조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그 후 정조 12년에 수위관들의 청원에 따라 예빈시 참봉 1과와 順康園 수봉관 1과를 충의과로 정했다.⁸⁰⁾

당초 조정에서는 충의 중에서도 양반이 확실한 부류를 수위관에 임용하도록 하였지만 보수적인 논자들은 서얼은 이른바 名家의 자제로 양반과 유사하지만 충의는 시골출신으로 충의를 모칭하는 잡류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⁸¹⁾ 충의는 양반보다는 中庶層과 유사한 부류로 인식되어 예빈시와 전옥서 참봉 자리를 두고 중서충과 경쟁해야 했다.

이상에서 보듯 음관의 초입사직은 자격 요건에 따라 생원·진사과, 유학과, 돈녕과, 중서과, 충의과 등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각각에는 임용 연령에도 제한을 두었다. 이 규정이 음관 초입사의 일반적인 인사 규정에 해당된다. 이 직과들의 대부분은 생원·진사과로 음관의 초입사는 생원·진사 임용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고, 유학과, 돈녕과, 중서과, 충의과 등은 그 수가 많지 않았다.

그런데, 8품으로 승진하거나 前銜으로 復職을 할 때는 직과별 자격 요건이 완화

77) 『숙종실록』 권46, 숙종 34년 8월 13일 병진

78) 『영조실록』 권28, 영조 6년 11월 27일 임진 “諸廟守衛官 以庶孽單付 上以爲於事體未安命以土人備三望差出 如寢郎”

79) 『승정원일기』 영조 24년 11월 4일 갑인

80) 『승정원일기』 정조 12년 5월 12일 계유

81) 『승정원일기』 영조 12년 6월 1일 갑자 “眞明曰 守衛官 每都目 遷轉實職 前有定奪 則亦一初入仕也 前則以爲庶孽不可用 用士夫 今又變而用忠義 中間變通 選擇之本意已歸虛 而寧不如用庶孽 庶孽則其身雖庶 其所出 率是名家 則其心與士夫無異 忠義則多鄉曲冒雜之類 不如庶孽亦明矣”

되었다. 가령 中庶層의 경우 초입사직은 예빈시참봉과 전옥서참봉으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승진 후에는 종묘, 사직서, 각승, 종부시, 사옹원 등의 일부를 제외한 다른 관서에 임용되는 데에는 제한이 없었다.⁸²⁾ 유학의 경우에도 초입사직은 가감역, 사산감역, 수봉관 등으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일단 초입사를 거친 후 前銜으로 임용될 때에는 의금부도사를 제외한 모든 생원·진사과에 임용될 수 있었다.⁸³⁾ 즉, 직과별 자격 제한은 초입사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초입사직에 직과별 자격 요건을 둔 것은 임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원·진사의 임용을 기조로 한 가운데 유학, 중서, 충의 등에게도 제한적이나마 임용의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정책적 배려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임용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도 있었다.

하나는 청백리, 선현, 전망인, 원사인 등 국가 유공자의 후손들을 녹용하는 경우이다. 이들은 처음부터 생원·진사나 유학을 막론하고 바로 참봉 등 생원·진사과에 임용될 수 있었다.⁸⁴⁾ 임용 연령은 인조 12년 생원·진사와 유학의 입사 연령을 정하면서 先賢·清白吏 봉사손은 40세, 전망인 친자 등은 30세로 정한 적이 있다.⁸⁵⁾ 그러나 영조 10년 이조참의 徐宗玉의 상소에 따르면 생원·진사 30세, 유학 40세의 초입사 규정은 준수되었지만 봉사손 초입사는 연령에 구애되지 않았다.⁸⁶⁾ 서종옥은 先蔭子孫의 등용에도 생진과 유학의 年滿法을 적용할 것을 청하였는데, 더 이상의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

또 하나는 국왕의 承傳을 받은 경우로 역시 직역이나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았다.⁸⁷⁾ 영조 13년 吳命恒의 아들 吳彥耆는 20살에 정릉참봉에 제수되기도 하였

82) 『典律通補』吏典 京官格式 “宗廟·社稷署·各陵·景慕宮·宗簿寺·司饔院·五部參外官 中庶當次則陞遷後 他司換差 尚瑞院 則換次擬”

83) 『典律通補』吏典 京官格式 “陵殿參奉·部都事·教傳·教官·洗馬 生進年三十以上 差 ○ 參下都事外 雖非生·進 前銜則勿拘[補]”

84) 『승정원일기』 숙종 4년 9월 28일 병인 “始壽曰 清白吏戰亡人子孫及先賢子孫 則雖非生進似當不拘於儒學 何以爲之乎 上曰 如此之人 勿拘幼學生進 擬望 可也”

85) 『인조실록』 권30, 인조 12년 10월 21일 갑진

86) 『영조실록』 권38, 영조 10년 6월 2일 병오

다.⁸⁸⁾ 그 후 영조 50년 영의정 홍낙순이 승전의 경우에도 연한을 적용하도록 계청하여 윤허를 받았다.⁸⁹⁾

또 하나는 道薦, 別薦, 御史薦, 館薦 등 천거를 받은 경우다. 『속대전』에 수록된 道薦의 규정에는 생원·진사는 30세 이상, 유학은 40세 이상으로 피천인의 연령에 제한을 두었다. 그러나 별천이나 어사천의 경우 특별히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⁹⁰⁾ 임용하는 직과에도 제한이 없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음관의 초입사 임용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하나는 일반적인 자격요건과 연령 제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경우이며, 하나는 국가유공자의 후손, 천거, 承傳 등 특정한 사유를 근거로 일반적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특례로 임용되는 경우다. 그리고 이 특례에 따라 유학들도 나이 제한 없이 생원·진사과에 임용될 수 있었다. 아래에서는 양자를 각각 ‘일반임용’과 ‘특례임용’으로 지칭하도록 하겠다.

87) 『승정원일기』 영조 2년 7월 13일 계묘 “秉常曰 … 東銓齋郎 雖是生進之窠 若有除職承傳 則無所拘礙 此亦有成命” ; 『승정원일기』 영조 15년 2월 7일 갑신 “傳于朴聖輅曰 追惟往時 心焉有感 青恩家奉祀孫 年滿則懿陵 · 惠陵參奉中 若有窠 卽爲差除 而年雖未滿 不可以常例爲拘 不待大政 他陵參奉 · 監役中 別爲調用事 分付該曹”

88) 『승정원일기』 영조 13년 9월 18일 계묘

89) 『승정원일기』 영조 50년 3월 20일 계유 “(洪樂純)又啓曰 初仕之限年差除 計仕陞付 法意有在 而近年以來 自上或記念其先故 或軫恤其疎遠 每下調用之命 此雖出於大聖人如天無私之盛意 而由是京華稚少之輩 遷方愚蠹之類 皆有希覬之心 風俗日渝 官方大壞 識者之寒心 蓋其久矣 請自此以後 凡有承傳而未滿年 未準仕者 毋得備擬 以杜倖門 以存政格 上曰 昨因相奏 其有大匡之稱 今者此啓 意甚切實 聞此 不覺扣闕 此雖由於予 意則深 官方捷徑 不可不思 依啓”

90) 『효종실록』 권10, 효종 4년 3월 13일 기묘 “仍謂吏曹判書沈之源曰 別薦之人 雖未知盡賢而今姑試用可也 之源曰 幼學亦擬初仕之望乎 上曰 可矣 之源又曰 初仕之人 例有年限 別薦中 或有未滿其限者 則如何 上曰 不必盡拘年限 然古人四十始仕 其意有在 若太少者不可矣 時白曰 三十以後則可用也 上曰 然” ; 『승정원일기』 숙종 13년 1월 26일 을사 “吏曹啓曰 因執義姜鏡上疏 時任 · 原任大臣 · 六卿 · 三司長官別薦事 命下矣 依壬戌年例別薦 異於常調 勿拘年限 勿論已仕與未仕 各薦三人 各其名下 縣錄其才行實狀 來二月十五日內定限單子進呈 而薦主別單書入之意 敢啓”

4. 『政事冊』을 통해 본 영조대 초입사직의 임용

1) 이조판서의 擬望法

조선에서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인사인 都政을 시행하는 한편 闕員이 있을 때는 수시로 임시인사인 散政을 시행하였다. 정사가 있을 때마다 이조와 병조는 궐원이 있는 자리에 후보자 3인을 首望, 副望, 末望 순으로 추천하는 望單子를 작성하여 국왕에게 올렸다. 국왕은 3명의 후보 중 한 명을 선택했는데, 대개는 이조와 병조의 추천순위를 따라 首望에 낙점하였다.

음관 초입사의 인사도 일반적인 인사 방식을 따랐다. 1년에 새로 임용하는 초입사직은 대략 30-40과 정도였던 것으로 이야기되는데, 이 중 대다수는 6월과 12월의 도목정사 때 인사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동반 초입사직의 擬望은 전적으로 이조판서의 소관사항이라는 특징이 있었다. 다른 관직처럼 의망과정에서 이조 관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는 있으나 초입사직 의망은 제도적으로 이조판서의 전권사항이었다. 따라서 이조판서가 궐원이거나 政事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초입사직은 아예 의망할 수 없었다.⁹¹⁾

이조판서는 초입사 임용에 대한 규정에 의거하여 생원·진사과, 유학과, 중서과, 충의과 등의 구분과 일반임용, 특례임용의 구분을 염두에 두고 각 窠의 요건에 부합되는 의망 대상자를 물색하여 3명을 갖춘 망단자를 작성하였다.

이조판서가 작성한 망단자는 이조의 인사기록을 담은 『정사책』을 통해 그 일단을 볼 수 있다. 이 책에는 직과별로 3명에 오른 후보자의 직역과 이름이 실려 있는데, 낙점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細注가 달려 있다. 원래는 3명 모두 세주를 달았을 것이나 『정사책』에는 생략되어 있다. 그런데, 초입사과의 세주는 크게 세 가지 형식을 취하고 있다. 가장 이를 시기인 영조 11년(1735)의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91) 『승정원일기』 현종 15년 8월 3일 갑오 “引見時 禮曹判書張善徵所啓 寧陵參奉有闕 而初入仕 無判書則不得差出 故尙今未差矣”

〈표 4〉『정사책』의 細注 사례

날짜	직과	직역	성명	세주
을묘 정월 초6일	선공감가감역	학생	魚有和	年五十
을묘 정월 25일	英陵참봉	학생	李彥煥	敬徽殿 進止忠義 除職
을묘 4월 22일	돈녕참봉	학생	李譚	明聖王后異姓四寸親

첫 번째 선공감가감역 어유화의 사례는 다른 정보 없이 나이만 기재하였는데, 『정사책』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경우다. 두 번째 영릉참봉 이언환의 경우는 나이는 기재하지 않고 임용한 사유를 기재하였다. 이언환은 경종비 선의왕후의 魂殿인 敬徽殿의 進止忠義 출신인데 선의왕후의 상이 끝난 후 전례에 따라 동반직에 서용하라는 왕명이 내렸다.⁹²⁾ 그 내용이 세주에 기재되어 있다. 세 번째 돈녕참봉 이담의 사례는 돈녕참봉에만 해당하는 경우로 왕실과의 친인척관계를 촌수로 기재한 것이다. 이담은 현종비 명성왕후 김씨의 손자뻨로 이성 4촌에 해당되었다.

위의 내용은 고종대 이조의 인사와 관련된 각종 규정과 관행을 정리한 『選部總例』의 初仕 항목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실려 있다.

初仕의 望筒에는 나이와 顯祖를 注로 단다.

承傳은 '承傳', 道薦은 천거한 道臣으로 주를 단다.

돈녕참봉은 敦寧으로 주를 단다.⁹³⁾

이 중 나이만 기재한 경우는 통상적으로 생원·진사와 유학을 임용할 때 적용하는 규정이었다. 인조 12년 생원·진사 30세 이상, 유학 40세 이상으로 임용 연령의 하한을 제정하면서 망단자에 나이를 기록하도록 한 결과이다.⁹⁴⁾ 『선부총례』에

92) 『승정원일기』 영조 8년 7월 1일 을유

93) 『選部總例』(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古朝31-163) 初仕 “初仕望筒年歲顯祖懸注 承傳則以承傳 道薦則以所薦道臣懸註 … 敦寧參奉望筒 敦寧懸註”

94) 『인조실록』 권30, 인조 12년 10월 16일 기해 “知經筵崔鳴吉啓曰 初入仕年限已定 而望單子年歲懸錄一款 則外議多以爲未妥 爲土者亦多厭之矣 上曰 爲土者若厭記年而仕 甚不可也

서 언급한 顯祖는 순조대 『정사책』에서부터 보인다.

나이 대신 별도의 의망 사유를 기재한 경우는 『선부총례』에서는 承傳이나 道薦의 경우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정사책』에서는 그 사례가 훨씬 다양하게 나타난다. 영조 11년에 보이는 사례들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영조 11년 『정사책』의 細注 사례

날짜	직과	직역	성명	의망 사유
을묘 정월 25일	英陵참봉	학생	李彥煥	敬徽殿進止忠義除職
을묘 윤4월 19일	寧陵참봉	학생	元一揆	佐理功臣元孝然孫錄用
을묘 6월 13일	寧陵참봉	학생	林萱	別薦
을묘 6월 13일	厚陵참봉	진사	李光庭	別薦
을묘 6월 13일	昌陵참봉	학생	李世規	清白吏李伯持孫
을묘 6월 13일	莊陵참봉	진사	李壎	館 公薦
을묘 6월 13일	서부참봉	前守衛	權振燦	久勤
을묘 6월 13일	남부참봉	학생	鄭敏迪	湖南 一千石 私賑人
을묘 6월 13일	북부참봉	학생	宋命琦	吏任入格
을묘 9월 25일	光陵참봉	학생	李觀聖	湖南別薦
을묘 9월 25일	厚陵참봉	前守衛	宋翼賢	久勤

위의 사례를 보면 왕명을 받은 承傳이나 관찰사의 추천인 道薦 외에도 別薦, 청백리 후손, 성균관의 公薦, 각묘 수위관의 久勤, 吏任入格⁹⁵⁾, 私賑 등의 다양한 사례가 보인다. 또 위에서는 사례가 보이지 않지만 제도적으로 주를 달아 의망하도록 한 경우도 있었다. 선현·청백리·전망인 후손이나 평안도, 함경도 출신들은 영조대 이전부터, 영남 출신과 개성 출신은 영조대부터 주를 달아 의망하게 하였

若果厭之 則尤不可不書也”

95) 이임입격은 3년마다 한번씩 시행하는 吏任薦舉에서 추천을 받은 후 取才에 입격한 경우를 말한다. 『승정원일기』 영조 5년 윤7월 21일 계사 “恒瑞進伏曰 小臣北部參奉趙恒瑞矣 上曰 履歷 恒瑞曰 以幼學吏任薦應講後 本職除授矣”

다.⁹⁶⁾ 이처럼 의망 사유를 세주로 기재한 경우는 다양하지만 나이 대신 의망 사유를 기재하였다는 점에서는 모두 동일하다. 이들은 직역이나 연령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임용에 해당된다.

敦寧參奉의 경우, 이미 『경국대전』에서 국왕이나 왕비, 世子嬪과의 촌수를 따져 일정 촌수 이내의 近親을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⁹⁷⁾ 이 때문에 의망의 근거로 그 촌수를 기재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돈녕참봉은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임용되더라도 바로 改差하였다.⁹⁸⁾

이처럼 『정사책』은 임용 근거에 따라 세주를 달리하였다. 따라서 망단자에 기재된 직역과 세주를 통해 초입사 여부와 의망의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나이가 기재된 경우는 '일반임용', 의망 사유가 기재된 경우는 '특례임용'으로 구분하여 영조대 『정사책』에 보이는 6년간의 임용결과를 살펴 보았다.⁹⁹⁾ 직과는 고유한 임용조건에 따라 '생진과', '중서과', '유학과', '돈녕과'로 구분하였고, 수위관을 임용하는 '충의과'는 중서과에 포함시켰다. 중서충과 충의수위관은 직과를 공유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사책』에서는 생원·진사는 진사로, 유학은 학생으로 지칭하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이를 각각 생원·진사, 유학으로 지칭하였다.

6년 동안 시행된 동반 초입사직의 인사는 모두 347과로 연평균 58과 정도였다. 매년 새로 충원된 자리 수는 유동적이었는데, 대체적으로 40과 전후였고, 영조 51

96) 『승정원일기』 영조 1년 5월 20일 정사 “上曰 … 而注擬之際 嶺南之人 無區別之事 則未能的知 北關西路 曾有懸註之規矣 今後則以嶺南懸註 可也 … 上曰 或以先賢·清白吏·戰亡子孫 有懸註錄用之規 先朝崇儒重道之意 可見 先賢子孫中收用也” ; 『續大典』 吏典 除授 “嶺南·北關·西關·松都人 望單子懸註”

97) 돈녕부 관원이 될 수 있는 범위는 국왕의 동성 9촌, 이성 6촌 이내, 왕비의 동성 8촌, 이성 5촌 이내, 세자빈의 동성 6촌, 이성 3촌친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경국대전』 이전 경관직 돈녕부

98) 『승정원일기』 현종 8년 8월 8일 경진; 『승정원일기』 영조 38년 1월 16일 경술

99) 영조대 『정사책』은 영조 11년(1735), 영조 21년(1755), 영조 41년(1765), 영조 44년(1768), 영조 50년(1774), 영조 51년(1775) 등 7년분의 자료가 남아 있는데, 이 중 영조 21년(1755)분에는 직역과 세주가 생략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6년치 자료를 분석하였다. 『정사책』에는 동반직 인사만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서반초입사직 인사는 실려 있지 않다.

년(1775)에는 71과로 예외적으로 많았다.

초입사직에는 前銜官도 함께 의망, 낙점되었다. 참하관은 초입사 재직 중에 경력이 단절되었다가 복직하면 다시 동일한 직급에서 범제로 정해진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승진할 수 있었다. 따라서 초입사직에 전함이 의망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었다. 이 중 전함이 임용된 경우는 73과로 전체의 21% 정도이다. 전함의 임용은 생원·진사과에 집중되어 있는데, 유학과 전함도 생원·진사과로 복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¹⁰⁰⁾

전함이 임용된 경우를 제외한 274과가 실질적인 초입사과로 연평균 33.8과 정도이다. 이 중 203과(74.1%)는 생원·진사과이고, 46과(16.8%)는 유학과로 생원·진사과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초입사직의 구성 자체가 생원·진사과 위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다.

〈표 6〉 영조대 『정사책』 수록 초입사 인사 (단위: 명)

職業 임용	일반임용			특례임용				미상	합계
	생원·진사	유학	소계	생원·진사	유학	총의 수위관	소계		
생원·진사과	135		135	15	50	1	66	2	203
유학과		42	42		1	3	4		46
총의·종서과	12		12	1	6	1	8		20
돈녕과					5		5		5
합계	147	42	189	16	61	5	83	2	274

細注의 형식에 따라 일반임용과 특례임용으로 나누어 보면 일반임용이 189과(69.0%), 돈녕참봉을 포함한 특례임용이 83과(30%)로 일반임용이 배 이상 많다. 음관 초입사직 인사 방식은 일반임용이 위주였고, 특례임용은 이를 보완하는 방법이었던 것이다.

100) 『승정원일기』 영조 37년 6월 19일 병술 “行司直洪象漢曰 士夫幼學之經初仕者 雖非生進亦以參奉復職”

낙점자의 직역 구성을 보면 일반임용과 특례임용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 일반임용의 경우 생원·진사과와 중서과에는 생원·진사만, 유학과에는 유학만 임용되었다. 각기 생원·진사와 유학을 임용한다는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반면 특례임용에는 직과의 자격 규정과는 다른 직역의 인물들이 중심을 이룬다. 그 중에서도 단연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생원·진사과에 유학을 임용한 것이다.

일반임용과 특례임용의 차이는 3망의 구성에서도 보인다. 일반임용은 3망 모두가 생원·진사인 경우가 128과, 3망이 모두 유학인 경우가 42과로 전체 189과 가운데 170과가 3망의 직역이 통일되어 있다. 의망할 때 직역이 동일한 인물들을 묶어 3망을 구성한 것이다.

반면 특례임용의 경우 3망의 구성이 다양하다. 가장 많은 경우는 유학을 首望으로, 생원·진사를 副望과 末望으로 세운 경우로, 72과 가운데 23과가 이런 경우이다. 승전에 의해 임용이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경우 형식적으로 부망·말망을 채운 탓일 것이다.

그런데, 특례임용 가운데도 副望이나 末望으로 낙점을 받은 경우가 8窠가 있었다. 이 중 4과는 봉사손을 임용하라는 承傳을 받은 경우였다. 이를 통해 승전을 받더라도 바로 수망에 의망되거나 임용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 한 사람인 학생 朴基正은 朴彭年의 적장자를 임용하라는 승전을 받은 후 영조 44년(1768) 6월 도정 때 長陵參奉의 부망에 올라 낙점을 받았다. 당시 수망인 학생 鄭德濟는 鄭汝昌의 적장손으로 역시 승전 임용대상자였다.¹⁰¹⁾

『이재난고』의 저자인 황윤석의 부친 黃氈은 영조 40년(1764) 6월의 도정에서 莊陵參奉의 부망에 들었다. 황전은 홍인한이 전라도 관찰사로 있을 때 道薦을 받았는데, 당시 이조판서인 李益輔가 ‘鄉曲人士’로 참봉망에 올렸다. 당시의 수망은 고경명의 봉사손으로 承傳을 받은 광주 출신의 高哲이었고, 말망은 경상도 성주 출신의 진사 李遂觀이었다.¹⁰²⁾ 이조판서가 지방출신들을 모아서 장릉참봉에 함께 의망한 것이다. 영조 11년(1735) 후릉참봉망을 보면 역시 수망인 진사 李光庭은

101) 『승정원일기』 영조 44년 6월 17일 계유

102) 黃胤錫(1629~1791) 『頤齋亂藁』 권4, 갑신년 7월 초1일 신해

別薦, 부망인 학생 奇挺龍은 湖南御史薦을 받은 인물로¹⁰³⁾ 천거를 받은 鄉人們을 함께 의망하였다라는 점이 눈에 띈다.

위의 사례들을 보면 특례임용을 할 때에도 서로 비슷한 조건을 가진 인물들을 뚫어서 3명을 갖추는 경향이 확인된다. 3명의 후보자들은 직역은 서로 다르지만 의망된 사유는 유사했던 것이다. 따라서 국왕이 누구를 낙점하더라도 임용된 인물의 성격은 유사하였다.

이를 통해 유추되는 이조판서의 의망 방식은 임용의 결과를 염두에 두고 자리 를 안배하여 유사한 조건을 가진 인물들로 3명을 갖추어 의망하는 것이다. 직과는 생원·진사과, 유학과, 중서과, 충의과 등으로 나뉘어져 있을 뿐이지만 이조판서는 여기에 더하여 일반임용과 특례임용을 안배하고, 특례임용 안에서는 다시 봉사손, 지방인, 승전인 등을 위한 자리를 안배하여 각각의 조건에 부합되는 인물들을 모아 3명을 갖춘 것이다. 이 방식으로 일반임용과 특례임용을 일정 비율로 안배하고, 특례임용에서는 다양한 조건의 인물들을 고르게 임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2) 음관 초입시직의 임용 경향

음관의 임용과 관련하여 가장 관심을 끄는 문제는 실제 누가 임용되었는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음관의 임용 결과는 조선후기의 정치적·사회적 개방성과 폐쇄성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도 있다. 음관의 의망 후보자는 그 범위가 한정없이 넓었다. 제도적으로 보면 음관 인사의 중심을 차지하는 생원·진사는 물론 이거니와 임용 가능한 유학, 국가 유공자의 봉사손, 천거를 받은 인물들, 지방인 등 후보자들은 부지기수였다. 그 가운데서 일 년에 임용되는 실제 인원은 고작 30-40명에 지나지 않았다. 제도적 규정과는 별개로 실제 어떤 인물들이 임용되었는가를 파악할 수 있어야만 음관 임용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미뤄두고 소략하나마 『정사책』을 통해 확인 가능한

103) 『승정원일기』 영조 19년 8월 9일 기미 “景夏曰 臣爲湖南御史時 薦奇挺龍 而銓曹不用 其後臣待罪銓官 而其人已故 不能收用 心甚惜之矣”

부분을 검토하며 그 대체적인 경향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먼저 일반임용된 인물들의 경우 『정사책』에 직역과 나이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임용의 배경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별로 없다. 그나마 확인 가능한 초입사 연령은 생원·진사과는 평균 43.0세, 유학과는 평균 49.1세였다. 영조대 생원·진사 합격자의 평균연령이 34.8세, 문과합격자의 평균연령이 38.6세라는 것에 비추어 보면 음관에 제수되는 평균연령이 가장 높았던 셈이다.

연령대의 분포를 보면 생원·진사 30세 이상, 학생 40세 이상이라는 연령 제한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었다. 그 가운데 생원·진사과는 30-44세에 147명 중 101명(68.7%), 유학과는 40대와 50대 전반에 42명 중 34명(81%)가 집중되어 10년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이 차이는 생원·진사와 학생의 초입사 허용 연령이 30세, 40세로 차등화된 데서 비롯된 것이다. 19세기 『음안』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생원·진사는 30대, 유학은 40대에 집중되어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¹⁰⁴⁾

〈표 7〉 『정사책』 수록 영조대 6개년 생원·진사 일반임용자의 임용시기와 임용연령

연령대 소요기간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69세	70-79세	합계
0-4년	23	19	13	6	4	2	1	1		69
5-9년	5	4	4	1	1	1		1		17
10-14년	2	10	12	6	1	1				32
15-19년	1		5		1	3	1	1		12
20-24년			1	1	1	3				6
25-29년									2	2
30년이상						1	1		1	3
미상	1		2	1			1	1		6
합계	32	33	37	15	8	11	4	4	3	147

104) 임민혁, 앞의 책, 235면. 임민혁은 일반임용과 특례임용을 함께 분석하였는데, 생원·진사는 30대가 43.8%(545/1,243명), 유학은 40대가 33.4%(385/1,153명)로 가장 높은 비율은 차지하였다.

생원·진사의 경우 『사마방목』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다. 『정사책』을 통해 확인되는 일반임용 생원·진사(중서과 포함)는 모두 147명이고, 이 가운데 141명이 『사마방목』에서 확인된다. 이 중 69명(48.9%)이 생원·진사시에 합격하고 4년 이내에 음직에 제수되었고, 그 이후에는 5-9년에는 17명, 10-14년 사이에는 32명으로 그 수가 줄어들었다. 구체적인 비율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19세기 『음안』에서도 0-5년 사이가 487명(39.1%)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보인다.¹⁰⁵⁾ 이 비율을 보면 이조판서가 초입사직을 의망할 때 新榜의 생원·진사를 집중적으로 임용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표 8〉 『정사책』 수록 영조대 6개년 생원·진사 일반임용자의 출신지역

출신지	경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평안도	황해도	미상	합계
인원	108	2	7	5	1	15	1	1	7	147

『사마방목』을 통해서는 본인의 거주지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임용 생원·진사 초입사자 141명 가운데 108명은 『사마방목』에 거주지가 ‘京’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비율은 76.6%에 이른다. 영조대 생원·진사시 합격자 4,800명 중 거주지가 京인 경우는 1,908명, 39.8%인 것에 비해 비율이 배 가까이 높다. 생원·진사에게 주어지는 蔭路 진출의 기회는 서울 출신들에게 편중되어 있었던 것이다. 지방의 경우도 충청도를 제외하면 다른 지역은 그 수가 너무 미미하여 한 도에서 1년에 읍관으로 진출하는 인원이 평균 한 명도 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19세기 『음안』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생원·진사 1,245명 중 거주지가 서울인 경우가 822명, 66.0%로 영조대 『정사책』의 분석결과에 비해 10% 정도 낮았다. 그러나 경기 125명(10.0%), 충청도 162명(13.0%)을 제외한 여타 지방 출신의 읍관 임용은 미미하였다는 점은 동일하다.¹⁰⁶⁾

105) 임민혁, 위의 책, 240면

106) 임민혁, 위의 책, 242면.

특례임용의 경우는 『정사책』에 임용의 근거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임용된 사람들의 성격을 좀더 살펴 볼 수 있다. 영조대 『정사책』에 보이는 특례임용의 사례는 돈녕친을 제외하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제도적으로 懸註하여 의망하도록 한 경우이고, 하나는 특별한 왕명에 의거한 承傳 임용이다. 확인되는 사례 74건 중 31명은 懸註 임용, 43명은 承傳 임용에 해당되어 승전 임용의 비중이 더 높다.

懸註 임용은 다시 청백리, 先賢, 순절인 등의 봉사손, 곧 국가 유공자의 봉사손 임용과 지방인 임용을 위한 道薦, 別薦, 御史薦 등 각종 薦舉의 피천인과 특정 지역인 임용으로 나뉜다.

그런데, 현주 임용에 해당하는 경우도 특별히 왕명으로 임용을 명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鄭德濟와 趙思觀은 각각 先正臣 鄭汝昌과 趙光祖의 봉사손을 임용하라는 왕명에 따라 의망되었다. 선정신 임용은 제도화되어 있었지만 실제 의망 과정에서는 왕명이 개입되어 있었던 것이다.

초입사직의 자리수는 제한되어 있고, 임용 자격을 갖춘 후보자의 수는 부지기수였다. 때문에 都目政事が 있을 때마다 임용을 강조하기는 하였지만 제도화된 봉사손 임용이나 피천인, 지방인 임용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그리하여 실제로는 특정인의 후손이나 특정 지역인을 임용하라는 왕명을 받아 의망한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승전 임용의 경우도 두 부류로 나뉜다. 하나는 숙종·영조대의 故臣이나 國舅 등의 자손을 임용한 경우다. 대개는 국왕이 자신을 보필했던 신하들의 자제에게 호의를 베푼 것이다. 후손을 임용한 인물로는 金昌翕, 柳復明, 崔奎瑞, 朴泰輔, 鄭翬良 등이 있다. 영조 50년(1774) 영의정 홍낙순은 영조가 고인이 된 선친을 기억하거나 그 형편이 어려운 것을 불쌍히 여겨 승전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였다.¹⁰⁷⁾ 이처럼 영조의 특명에 의한 초입사 임용은 영조대 후반에 특히 많이 나타나는 듯하다.

107) 『승정원일기』 영조 50년 3월 20일 계유

이와 달리 本人을 임용하도록 한 경우도 있다. 우선 직무에 대한 포상으로 魂宮의 守衛官과 忠義를 임용하거나 장기근무자들을 임용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와 달리 왕의 호의로 특정 개인을 임용한 사례도 있는데, 그 사유는 상당히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가령 金叔鳴과 李若采는 각각 함경도 길주와 평안도 안악 출신으로 여든을 전후한 나이에 성균관에 居齋한 것이 영조의 눈에 띄었다.¹⁰⁸⁾ 두 사람은 老人, 평안도·함경도 출신, 성균관이라는 영조의 관심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임용에 이를 수 있었다.

〈표 9〉『정사책』 수록 영조대 6개년의 특례임용 사례(단위: 명)

구분		생진과	중서과	유학과	합계	
懸註 임용	봉사순	江都殉節人	2		2	
		功臣	6	1	7	
		死節人	2	1	3	
		先正	3		3	
		冤死人	1		1	
		清白吏	6		6	
		소계	20	2	22	
	천거·지방인	·	9		9	
承傳 임용	소계	·	29	2	31	
	후손 임용	·	24		24	
	본인 임용	·	13	6	3	19
	소계	·	37	6	3	43
합계		·	66	8	4	74

이상과 같은 구성을 보면 특례임용은 선조의 공로에 대한 보상이나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배려, 본인의 업무에 대한 포상의 성격이 강하다.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恩賜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효과도 있으나 상징적인 임용을 통

108) 『승정원일기』 영조 40년 4월 17일 무술; 『승정원일기』 영조 51년 4월 22일 기해.

해 불평등을 은폐하려는 다분히 토크니즘적인 의도도 반영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고관의 자제나 世家의 후손들이 지속적으로 관료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해 주는 효과도 있었다.

특례로 임용된 인물 78명의 직역 구성은 생원·진사가 16명, 유학이 57명, 충의·수위관이 5명으로 유학이 73%(57/78명)를 차지하며, 임용된 직과는 생원·진사과가 66과로 85%(66/78)를 차지하였다. 특례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유학을 생원·진사과에 임용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정사책』에 수록된 초임사과는 생원·진사과 203과, 유학과 46과로 4.3:1의 비율을 보이지만 실제 임용된 인원은 생원·진사 150명, 유학 93명으로 1.6:1의 비율을 보인다. 결과적으로 특례임용은 유학들을 생원·진사과에 임용하는 경로로 활용되었던 것이다.¹⁰⁹⁾

특례임용의 다수를 차지하는 유학의 경우 『정사책』에 임용 사유만 실려 있어서 그들이 어떤 사회적 배경을 가진 인물들인지 알기 어렵다. 이에 비해 생원·진사는 사마방목을 통해 그들의 이력을 좀 더 추적해 볼 수 있다. 특례임용된 생원·진사는 모두 16명이다. 이 중 10명은 서울 출신이며, 그 중 6명은 생원·진사가 된 후 4년 이내에 임용되었다.¹¹⁰⁾ 이에 비해 지방 출신은 경상도 출신 2명을 제외하면 모두 생원·진사가 된 후 20년 이상이 지난 노년에 임용되었다. 이처럼 서울 출신에게 편중된 인사 결과는 생원·진사의 일반임용과 별반 차이가 없다.

109) 임민혁이 분석한 19세기 『음안』의 임용 상황은 생원·진사 1,243명, 유학 1,153명으로 영조대 『정사책』에 비해 유학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이는 그만큼 특례임용이 늘어났다는 의미이다. 입사 경로가 확인된 사례가 생원·진사 45명, 유학 347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도 유학은 특례임용이 많아 그 사유가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임민혁, 앞의 책, 235면.

110) 16명 중 崔奎瑞의 손자인 崔粹臣은 사마방목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승정원일기』에 그가 漢城府 西部 蓮池契에 거주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승정원일기』 정조 즉위년 5월 2일 갑술[임신]

〈표 10〉 특례임용 생원·진사의 임용 시기와 거주지

거주지 소요기간	0-4년	05-9년	10-14년	20-24년	30년이상	미상	합계
경	6	1	1	1		1	10
경상도	2				1		3
충청도				1			1
평안도					1		1
황해도					1		1
합계	8	1	1	2	3	1	16

특례임용은 정책적 배려를 반영하는 은사적 인사로 그 대상이 다기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서울세가의 자제들을 등용하는 高官이나 國舅 등의 후손을 承傳 임용한 사례가 많았고, 지방인을 임용하는 鄉薦이나 別薦으로 추천된 인물을 임용한 사례는 그리 많지 않았다. 따라서 일반임용에 비해 임용대상자의 폭이 확대되기는 하였지만 일반임용과 확연히 다른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다. 유학의 경우 개개인의 배경은 알 수 없으나 생원·진사와 경향이 유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영조는 재위 초부터 鄉人們의 초입사 임용을 강조하였고, 재위 44년 도목정사 때는 京人과 鄉人으로 구분하여 懸註하고 반반씩 의망하도록 하명하기도 하였다.¹¹¹⁾ 영조가 지방인들의 임용에 크게 관심을 쏟은 것은 이처럼 음관 임용이 서울 출신에게 편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영조대를 통해서도 이런 편중 현상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음관 진출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그 구도가 쉽게 달라지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영조대를 통하여 정책적으로 지방인을 임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등장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한편 영조대에 나타나는 서울 출신들의 편중적 임용이 조선 전시기의 경향성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문과의

111) 『승정원일기』 영조 44년 6월 17일 계유 “以承傳色口傳下敎曰 東銓初入仕 半則鄉人備擬 半則京人備擬 而若以金若行者流爲之 則銓官當下敎 京鄉懸註以入”

경우를 보면 17세기 이래 서울 집중도는 갈수록 약화되었다. 이런 변화에는 영조가 지방 유생들을 배려하여 친림시의 시험 과목을 개편한 것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정치적 집중도가 높은 세도정치기에 이전보다 지방 출신 급제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집권세력은 성균관 과시를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문과급제자를 배출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하고 문과 일반은 보다 개방적으로 운영하였다.¹¹²⁾ 음관의 경우 아직 그 경향성을 논의할 만큼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 다만 19세기 『음안』의 분석 결과는 영조대에 비해 서울 집중도는 떨어지고 경기도와 충청도 집중도가 높아진 경향성이 보인다.¹¹³⁾ 영조대 음관 임용의 편중성 문제는 좀더 장기적인 추세 속에서 검토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5. 맷음말

이 글은 조선후기 음관의 초입사 경로에 대한 학계의 이해가 불분명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음관의 초입사 경로를 추적하였다. 먼저 음관의 초입사에 관련된 각종 규정을 검토하고, 영조대 『정사책』을 분석하여 초입사 인사의 경향성을 고찰하였다. 본문에서 논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전기 음관의 초입사는 주로 蔭子弟取才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명종대에 생원·진사 임용을 정식화한 이래 음자제취재는 점차 유명무실화되고 생원·진사의 임용이 음관을 임용하는 주된 방법으로 자리잡았다. 다만 유학, 중서증 등에게도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임용의 기회를 열어 주었다. 『속대전』을 기준으로 보면 초입사직 71과가 가운데 생원·진사를 임용하는 生員·進士科가 59과(83%)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幼學窠 7과, 中庶窠 4과, 敦寧窠 1과로 구성되어 있었다. 초입사연령도 생원·진사는 30세 이상, 유학은 40세 이상으로 차등화되어 있었다. 조선후기 음관의 초입사는 생원·진사 임용이 근간을 이루고 있었다.

112) 박현순, 2014 『조선후기의 과거』, 소명출판, 285-289면, 303-308면.

113) 임민혁, 앞의 책, 242면.

일반적인 인사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임용도 있었다. 청백리, 先正臣, 殤節人 등 국가 유공자의 봉사손이나 別薦, 鄉薦을 추천을 받은 인물들, 왕명을 받은 承傳 임용 등은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특례로 임용하였는데, 직과의 구분이나 연령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생원·진사과에 임용될 수 있었다. 조선후기 음관의 초입사 임용은 일반임용과 특례임용의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음관의 초입사 임용은 이조판서의 전권사항이었다. 이조판서는 생원·진사과, 유학과, 중서과 등 직과의 구분 하에서 일반임용과 특례임용을 일정 비율로 유지하고, 특례임용에서는 다양한 조건의 인물들을 임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안배하였다. 제도의 틀 속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적절하게 직과를 안배하는 것이 이조판서의 역할이었다.

영조대 『정사책』에 수록된 6개년의 인사기록을 종합하면 초입사 인사 274명 가운데 일반임용이 189명, 특례임용이 83명으로 대략 7:3의 비율을 보인다. 음관 인사는 일반임용이 중심이고, 특례임용은 이를 보완하는 방법이었다.

일반임용된 189명은 생원·진사가 147명, 유학이 42명으로 생원·진사가 중심을 차지한다. 그리고, 생원·진사 147명 중 69명(47%)은 생원·진사가 된 후 4년 이내에 음직을 받아 음관 임용에서는 新榜生員을 우선한 경향이 보인다. 또 147명 가운데 108명(76.6%)은 서울 출신으로 극심한 서울 편중 양상을 보인다.

특례임용된 83명은 생원·진사 16명, 유학 61명, 충의수위관 출신 5명으로 유학이 중심을 차지하며, 이들이 임용된 직과는 83과 중 66과가 생원·진사과이다. 즉, 특례임용에서는 유학을 생원·진사과에 임용하는 것이 중심을 차지하였다. 그런데, 특례임용된 생원·진사의 구성을 보면 16명 중 8명은 생원·진사가 된 후 4년 이내에 음직에 임용되었고, 16명 중 10명은 서울 출신이어서 일반임용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특례임용은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진행되는 인사로 그 구성이 다기하였다. 그러나 故相의 자제나 후손들에 대한 은사적 임용이 많았던 반면 別薦이나 道薦 등으로 천거를 받은 지방출신의 임용은 적었다. 이런 경향 때문에 지방 출신보다 서울 출신들이 많이 임용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특례임용의 실질적인 효과는 유학을 생

원·진사과에 임용하여 유학의 음직 진출을 확대하였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음관의 임용 문제에 관련하여 학계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은 정치적·사회적 권력관계가 음관의 임용에 반영되었는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그리고 통념상 그럴 것이라는 예측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일단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당초 음자제취재에서 생원·진사 임용으로 전환한 것은 가족적 배경인 門蔭이 아니라 개인의 자질과 公論에 근거하여 음직을 배분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리고 생원·진사는 자격이 일차적인 기준이 되었다. 조선후기의 음관 임용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자질과 자격에 입각한 인사를 우선하였다. 물론 자질과 자격을 갖춘 다양한 인사들 가운데 누구를 임용할 것인가는 정치적 선택으로 남아 있었다.

이 글은 조선후기 음관 인사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로 초입사의 제도적 규정과 대체적인 임용 경향을 추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음관의 임용 현황과 그 정치·사회적 속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은 여전히 연구 과제로 남아 있다.

논문투고일(2021. 5. 11), 심사일(2021. 5. 24), 게재확정일(2021. 6. 9)

참고문헌

1. 자료

- 『經國大典』.
『續大典』.
『大典通編』.
『典律通補』.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政事冊』(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貴12222).
『選部總例』(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古朝31-163).
『初仕調用』(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K2-2061).

2. 연구 논저

- 김성우, 2001 『조선중기 국가와 사족』, 역사비평사.
김충현, 2018 「『明陵先生案』을 중심으로 본 조선후기 陵官의 변화와 운용」, 『장서각』 39.
나영훈, 2020 「조선 현종대 문과급제자의 관직 경로와 배경」, 『조선시대사학보』 94.
박현순, 2014 『조선후기의 과거』, 소명출판.
朴洪甲, 1994 『朝鮮時代 門蔭研究』, 探求堂.
신해순, 1986 「朝鮮前期의 京衙前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任敏赫, 2002 『朝鮮時代 蔭官研究』, 한성대 출판부.
정구선, 1995 『朝鮮時代 薦舉制度研究』, 초록배.

Abstract

Eumgwan's Initial Government Appointment in the Late Joseon Period

Park, Hyun Soon *

The understanding of the route of initial government appointment for Eumgwan (蔭官) in the late Joseon period has been unclear,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appointment methods of it. First, it will examine policies regarding Eumgwan's initial government appointment and its posts, and analyze how the appointment was operated based on Jeongsachaek during King Yeongjo's reign.

Eumgwan in the early Joseon period was initially appointed mainly through testing the protected appointment candidates. However, as the appointment system for literary licentiates and classics licentiates had been formulated during King Myeongjong's reign, it replaced the testing system and became the main method for appointing Eumgwan. Although restricted, it also opened up opportunities for yuhak (幼學) and middle-class people to enter public office. Additionally, the ritual heir of a meritorious family or people from the countryside recommended through the local magistrate or other recommendation systems were also specially appointed.

Unlike other official posts, the recommendation for Eumgwan's initial government posts was conducted solely by the Minister in the Board of Personnel. Their actual appointment shows us that it was centered on the appointment of literary and classics licentiates with special appointment that functioned as the advancement to government posts for yuhak. Appointment of literary and classics licentiates gave priority to the new passers of the exam and was predominated by people from the capital. Through this study, we can

* HK Associate Professor,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comprehend the route of Eumgwan's initial government appointment, the appointment methods, and its results.

Key words : Eumgwan (蔭官), Eumgwan's Initial Government Appointment, Jeongsachaek (政事冊), literary and classics licentiates, Protection Privilege, Testing the protected appointment candidates